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연구진

이소영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진경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강현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대구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인구구조 변화 급변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로 서울, 부산, 대구 등으로 나타남
 - 전국 합계출산율 하위 10개 시군구 중에도 대구 서구와 남구가 순위가 올라 2개 자치구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대구광역시는 2018년 8월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매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인구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구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제안

-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인구정책을 시행 중에 있으나, 관련 정책을 추진한 지 15년이 흘러 가고 있음에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심화
- 이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인구영향평가 등 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먼저 실행되기 시작
 -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으며, 이후 경남이 유사한 제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 부산 등도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준비중에 있음
- 각 지역별로 처한 정책여건이 상이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대구시 여건에 맞는 대구 맞춤형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음

2. 주요 연구내용

□ 인구영향평가제도 관련 논의

- 정책 대안의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는 사전적으로 실시되는 영향분석과 사후적으로 수행되는 영향평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영향평가 제도로서는 최초 도입된 환경영향평가로 인하여, 사전·사후 모두 영향평가 제도로 통칭하는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에서 인구영향평가가 최초로 도입되었던 시기는 1984년이나 인구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기보다는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분으로 구축·운영된 것이며, 인구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임
- 일반적으로 영향평가제도는 규제형과 규범형으로 구분 가능한데,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규제형 영향평가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으며, 권고적 성격을 갖는 규범형 영향평가로는 성별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이 있음
 - 과거 인구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된 인구영향평가 제도가 규제형 영향평가제도였다면, 오늘날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인구 구조와 규모의 개선, 즉 인구의 긍정적 효과를 확산시키기 규범형 영향평가제도임

□ 기존 인구영향평가제도 분석

- 국내에서 규범형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사례는 2017년 부천시이며,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2018년 최초로 시행
 - 2022년 현재, 관련 조례상에 인구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경남, 서울, 부산 등임
-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평가대상은 인구정책 관련 조례상 규정하고 있는 인구정책이며, 매년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전문 평가단에 의해 심층평가의 방식으로 인구영향평가 제도 운용 중

- 최초 도입된 경기도의 사례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틀에서 시사점을 얻어, 성, 연령, 가족, 여성, 인구증감 등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경기도 경기도와 유사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채택해오다가, 2022년 8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인구정책 업무를 청년정책추진단으로 이관하여 청년정책 총괄부서가 인구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며, 인구영향평가도 담당하고 있음

□ 대구시 맞춤형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방안

○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① 인구정책 목적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오늘날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인구구조 및 규모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규범적인 영향평가제도이므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인구정책 목적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3조에 따르면, 시장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즉,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되지 않도록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인구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정책의 영향 정도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고지할 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② 정책 순환과정상 사전 및 사후 영향평가제도 고려

- 현재 대구는 인구정책 중점과제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체계를 살펴보면, 이는 환류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후적 영향평가제도에 해당
- 여러 정책 대안들에 대한 사전적 영향평가의 수행으로 실효성 높은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적 영향평가제도 도입도 고려 필요

- ③ 현실적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고려한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 과도한 평가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많은 행정비용과 부서간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구시의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제도 방안을 제안하도록 함
 -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영향평가는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고용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제도를 검토한 결과, 주요 재정지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받는 체계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 범위 등을 평가주체의 역량,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설계

○ 제도 도입 전략

- ① 단계별 도입방안 마련
- 단기적으로는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추진과제 성과평가를 인구영향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도입방안 강구
 - 중장기적으로 조례/계획/사업 대상 인구영향평가 기본모형 도입
- ②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도입방안 제안
-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인구정책이 실제 인구구조 및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 시범 적용 방안 모색

□ 단계별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 도입 여건

〈표 1〉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여건

구분	상세내용	비고
관련 제도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3조 시장은 인구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인구영향평가 규정 없음
관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0~2024) 기수립 2022년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기수립 ① 인구유입 활성화, ② 저출산 극복, ③ 고령화 연착륙, ④ 인구 변화 대응 제시의 4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35개 실천과제 중 직접적 인구정책에 해당되는 인구유입 활성화 및 저출산 극복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제도 고려 가능 	기본계획상의 인구정책은 간접계획을 포함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래인구정책팀(팀장 1명, 주무관 3명)은 인구정책 외 시정발전 업무 함께 수행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현재 주무관 1인이 수행하고 있는 인구정책 업무를 팀 단위에서 수행 중 	현재 업무만으로도 업무 과중

-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시범사업) 설계

〈표 2〉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구분	상세내용
평가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정책팀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인구영향평가 대상의 확정 담당 사업부서의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전문가의 심층평가 실시 심층평가결과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 사업부서 송부 개선대책 수립 등 반영계획 제출
평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상 단년도 사업기간 해당년도에 맞추어 평가 실시 현재 평가시기와 동일하거나 예산반영을 위해 조기에 실시 가능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인구 유지라는 현재의 대구시 인구목표 달성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정책을 선정 민선자치단체장의 변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22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 중에서 선정
평가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결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환류 조치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 도입 여건

〈표 3〉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여건

구분	상세내용	비고
관련 제도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상 인구영향평가 규정 추가 (조례 개정안) 현재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이 규정되어 있는 제7조를 개정하여, 2항 규정 신설 (조례 신설안)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 2항 신설
관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 수립시 적용 계획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적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2차 종합계획 수립시 적용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정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전담할 주무관 1인 확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주무관 1인이 인구영향평가 업무 전담 수행 중)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 검토 	미래업무 이관, 인구정책 조직으로 확대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표 4〉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구분	상세내용
평가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정책팀 또는 인구영향평가센터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계획 수립전 사전 인구영향평가 실시 계획안 대상 시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의 체크리스트 항목 검토 및 의견 수렴 관련 분과 구성을 통한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정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매년도 사후 영향평가제도 실시
평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영향평가는 5개년 종합계획(2025~2029) 수립 이전인 2024년도에 실시 사후영향평가는 예산상 단년도 사업기간 완료시점에 맞추어 평가 실시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영향평가는 5개년 종합계획안을 대상으로 실시 사후영향평가는 시행계획상 중점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실시
평가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영향평가 결과는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사후영향평가 결과는 매년도 시행계획상 사업내용에 반영

제1장 |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5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1. 연구범위	7
2. 연구방법	8

제2장 | 인구영향평가제도 관련 논의

제1절 인구정책과 영향평가제도	11
1. 인구정책의 정의 및 유형	11
2. 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유형	14
제2절 해외의 영향평가제도 사례분석	21
1. 미국의 가족영향평가 제도	21
2. 독일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24
3. 영국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26

제3장 | 인구영향평가 관련 제도 분석

제1절 중앙정부 관련 제도	35
1. 인구영향평가 제도	35
2. 고용영향평가 제도	37
3. 성별영향평가 제도	39

제2절 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사례분석	44
1. 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현황	44
2. 경기도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46
3. 부산시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57
4. 서울시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61
5. 경상남도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64

제4장 | 대구시 인구정책 여건 분석

제1절 대구시 인구현황 및 이동특성 분석	71
1. 대구시 인구현황 및 전망	71
2. 대구시 인구이동 및 특성	83
제2절 대구시 인구정책 현황	96
1. 대구시 인구계획 및 평가 현황	96
2. 대구시 인구정책 관련 조직 현황	107

제5장 | 대구시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제1절 기본방향 및 도입 전략	111
1.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111
2. 제도 도입의 목표 및 추진전략	114
제2절 단계별 인구영향평가 설계	117
1.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117
2.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127

제6장 |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절 관련 제도 개편방안 135

 1. 인구영향평가 관련 조례 검토 135

 2. 대구 인구영향평가 관련 조례 개편안 139

제2절 관련 조직 개편방안 140

 1. 인구정책 전담조직의 개편안 140

 2. 인구영향평가 실시기관의 지정안 141

【참고문헌】 143

표목차

〈표 2-1〉 영향평가의 유형	16
〈표 2-2〉 우리나라 주요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사례	17
〈표 2-3〉 미국 가족영향평가 항목	22
〈표 2-4〉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정부의 인구영향평가 관련 문항	25
〈표 2-5〉 계획수립 초기 단계 체크리스트 양식	29
〈표 2-6〉 그룹별 잠재적 건강영향 체크리스트 양식	30
〈표 2-7〉 웨일즈 건강 및 복지 결정요인 체크리스트	31
〈표 3-1〉 고용영향평가 평가 절차	37
〈표 3-2〉 고용영향평가 지표	38
〈표 3-3〉 성별영향평가 지표	40
〈표 3-4〉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43
〈표 3-5〉 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현황	44
〈표 3-6〉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46
〈표 3-7〉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방법	48
〈표 3-8〉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운영 방식	48
〈표 3-9〉 경기도 인구정책 담당 업무 분장	50
〈표 3-10〉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자체진단서 작성서식(2022년)	51
〈표 3-11〉 전문가 평가의견 서식	53
〈표 3-12〉 부천시 인구영향평가(예시)	55
〈표 3-13〉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57
〈표 3-14〉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담당업무 분장	60
〈표 3-15〉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2023.1.1. 시행)	61
〈표 3-16〉 서울시 인구정책 담당업무 분장	64

〈표 3-17〉 경상남도 인구정책 조례	65
〈표 3-18〉 민선 7기 경상남도 인구정책 담당 업무 분장	67
〈표 3-19〉 민선 8기 경상남도 인구정책 담당 업무 분장	68
〈표 4-1〉 대구시 인구 및 연평균 인구증감률 추이	72
〈표 4-2〉 시도별 총인구 및 구성비 전망: 2020~2050년	74
〈표 4-3〉 대구시 연령대별 인구구조 추이	76
〈표 4-4〉 대구시 인구감소 요인별 현황	79
〈표 4-5〉 대구시 구군별 인구 및 연평균 인구증감률 추이	81
〈표 4-6〉 대구시 연령대별 인구구조 추이	82
〈표 4-7〉 대구시 시도간 순유출 현황	84
〈표 4-8〉 대구시 구군별 인구가동(2021년 기준)	86
〈표 4-9〉 대구시 인구가 유출하는 지역현황	88
〈표 4-10〉 대구시 연령대별 인구가동	89
〈표 4-11〉 대구시 경제활동상태별 이동인구(2020년 기준)	90
〈표 4-12〉 대구시 교육정도별 이동인구(2020년 기준)	91
〈표 4-13〉 대구시 구군별 청년인구수 및 비율	92
〈표 4-14〉 대구시 1981~1985년 출생자의 연도별 연령대별 인구규모 변화	93
〈표 4-15〉 대구시 구군별 연령대별 인구 순이동량(2015-2019 5년간)	94
〈표 4-16〉 대구시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원인(2019년 기준, 세대주만)	95
〈표 4-17〉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주요 내용	97
〈표 4-18〉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전략별 세부실천과제	99
〈표 4-19〉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추진전략	101
〈표 4-20〉 2022년 대구시 생애주기별 주요 인구정책(신규·확대)	102
〈표 4-21〉 성과지표 예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104
〈표 4-22〉 2022년 대구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상의 중점추진과제안	106
〈표 4-23〉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담당업무 분장	108
〈표 5-1〉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여건	118

〈표 5-2〉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119
〈표 5-3〉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지표설계	121
〈표 5-4〉 대구 인구영향평가 자체진단서 예시	123
〈표 5-5〉 전문가 심층평가서 예시	125
〈표 5-6〉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여건	127
〈표 5-7〉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130
〈표 5-8〉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사전영향평가 관련 체크리스트 예시	131
〈표 6-1〉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담당업무 분장 개편안	140

그림목차

〈그림 1-1〉 합계출산율 추이	3
〈그림 1-2〉 합계출산율 하위 10개 시군구	4
〈그림 2-1〉 정책 순환과정 개념도	15
〈그림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직도	36
〈그림 3-2〉 고용영향평가 센터 조직도	39
〈그림 3-3〉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추진체계	49
〈그림 3-4〉 2021년 부산시 인구정책 추진현황	59
〈그림 3-5〉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59
〈그림 3-6〉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추진체계	61
〈그림 3-7〉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추진체계	63
〈그림 3-8〉 민선 7기 경상남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66
〈그림 4-1〉 대구시 연도별 인구 추이	71
〈그림 4-2〉 시도별 인구성장률 전망	73
〈그림 4-3〉 시도별 인구성장률 전망: 2020년과 2050년	75
〈그림 4-4〉 대구시 연령대별 인구구조	77
〈그림 4-5〉 시도별 연령대별 인구증감률 전망: 2020년 대비 2050년	78
〈그림 4-6〉 대구시 출산율 추이	80
〈그림 4-7〉 대구시 구군별 인구추이	81
〈그림 4-8〉 대구시 구군별 연령대별 인구구조(2021년 기준)	83
〈그림 4-9〉 대구시 구군별 인구이동(2021년 기준)	85
〈그림 4-10〉 대구시 구군별 인구이동(2021년 기준)	86
〈그림 4-11〉 대구시 인구유출지역	87
〈그림 4-12〉 대구시 연령대별 인구유출 현황	90

〈그림 4-13〉 대구시 구군별 청년인구 비율 및 증감	92
〈그림 4-14〉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98
〈그림 4-15〉 인구정책 평가절차	103
〈그림 4-16〉 2022년 인구정책 평가계획	106
〈그림 4-17〉 인구정책 담당조직	107
〈그림 5-1〉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평가절차	122
〈그림 5-2〉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 절차	128
〈그림 6-1〉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영향평가 관련 규정	136
〈그림 6-2〉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138

제 1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1장 연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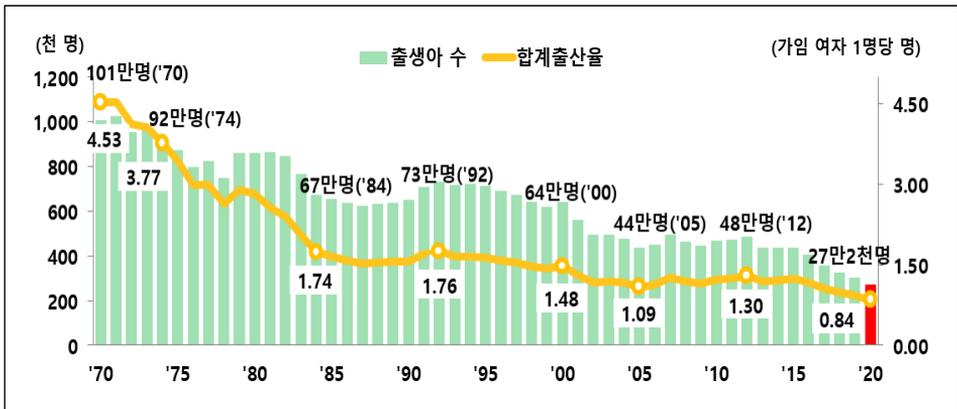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 문제 대두

- 저출산·고령화가 진전되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며, 저출산·고령화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해옴
 -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021년부터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중

〈그림 1-1〉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출생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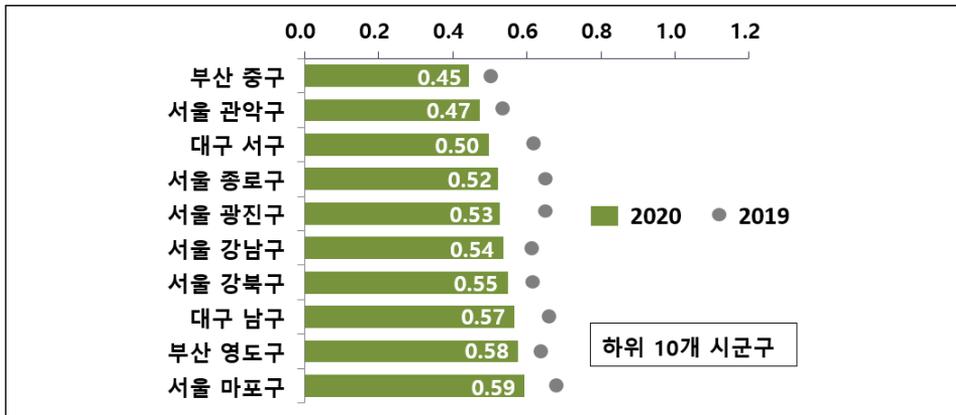
- 관련 정책을 추진한 지 15년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며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할 정도에 이르고 있음

-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가 심화되자 정책의 효과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됨
 -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이 시도되기도 하며, 인구영향평가 등 정책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

□ 대구광역시의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인구구조 변화 급변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은 전국적인 현상이나, 이 가운데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극심
 -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광역자치단체는 서울(0.64명), 부산(0.75명), 대구(0.81명), 대전(0.81명) 광주(0.81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 합계출산율 하위 10개 시군구



자료: 통계청(2021), 2020년 출생통계

- 대구광역시의 경우 합계출산율 하위 10개 시군구에 서구(0.5명), 남구(0.57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급감하여, 2개 자치구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도 지정되어 있음

□ 대구광역시의 인구정책 조례 제정 및 관련 정책 추진 점검 필요

- 대구광역시는 2018년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법으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시장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 관계법 및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매5년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산하 미래인구정책팀에서 인구정책 업무전반을 수행하고 있음
 - 인구정책팀은 2017년 11월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내 최초 신설된 이후, 현재는 정책기획관내 미래인구정책팀으로 총괄기능 조정
-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뿐만 아니라,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 차원의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대구시의 경우 타 시도와 다르게 조례에 인구영향평가 등의 시행을 위한 별도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구시 여건에 맞는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연구목적

□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인구영향평가 설계

-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광역시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해 대구시의 인구여건 및 계획 등을 분석하여 대구시 여건에 맞는 인구영향평가를 설계하는데 있음

- 인구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분석 및 대구시 지역여건 등의 분석을 통해 대구형 인구영향평가 지표설계

□ 대구시 맞춤형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제안

- 현 시점에서 대구광역시가 적용할 수 있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제안
 - 현재 대구광역시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서구 및 남구 등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할 필요가 제기
 - 지역의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구시의 맞춤형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 제안
- 새로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례개정 방안 등 제시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구광역시이며, 인구구조 및 이동특성 분석의 공간적 단위는 8개 구군을 기준으로 삼음
 - 인구정책 및 계획, 조례 등은 대구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되, 인구여건 분석은 구군간 특성 및 격차 등을 살펴보기 위해 8개 구군으로 분석
 -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8개 구군

□ 시간적 범위

- 2022년 현재 구득가능한 최신 DB를 구축하여 인구여건 분석
- 필요시 인구변화율 등 일부 지표는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분석 예정

□ 내용적 범위

- 인구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국내외 논의 검토
 - 영향평가제도는 사전적 영향분석(impact analysis)과 사후적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인구영향평가라는 용어로 통칭하도록 함
- 인구정책 및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사례 검토
 - 1980년대 도입된 인구영향평가 제도는 추이만을 살펴보고, 인구정책 수립에 따른 영향평가로서 도입된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분석
- 대구광역시 구군별 인구여건 및 특성 분석
- 대구광역시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방안 제안

-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사전적 평가 및 사후적 평가, 정량 및 정성평가 등 다양한 지표설계가 가능하므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고려하여 단계적 제도 적용방안을 제안하도록 함

2. 연구방법

□ 문헌 및 2차자료 조사

- 인구정책 및 인구영향평가제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및 정책보고서 조사
- 현재 추진 중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련 정책 현황 조사

□ 활용가능한 구군별 통계 데이터 구축 및 인구여건 분석

- 통계청 관련 DB 조사 및 구축
- 대구광역시 사회조사 등 관련 조사결과 활용

□ 전문가 워크숍 및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 인구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등 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및 자문회의 개최
- 대구시 맞춤형 인구영향평가 설계를 위한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실시



제 2 장

인구영향평가제도 관련 논의

제1절 인구정책과 영향평가제도

제2절 해외의 영향평가제도 사례분석

제2장 인구영향평가제도 관련 논의

제1절 인구정책과 영향평가제도

1. 인구정책의 정의 및 유형

□ 인구정책의 정의 및 범위

- Demeny(2010)는 인구정책이란 정부가 인구학적 변화를 이끌기 위하여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조정한 제도 환경이나 프로그램으로 정의
- May(2012)는 사회의 목표와 인구학적 상황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취하는 직간접 정책을 인구정책으로 정의
- Eldridge(1979)에 따르면, 인구정책은 정부가 국민의 생존과 복지를 위하여 인구·사회경제적 및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출생, 사망, 결혼, 이혼 등 현재의 인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나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정부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는 인구에 대한 정책은 제외(이삼식, 2013)
- 인구정책은 국가나 지역이 지향하는 목표에 인구학적 상황이 조응하도록 하는 직간접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김종훈 외, 2018)
 - 인구정책이 경제정책이나 여타의 지역정책과 구별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정책목표가 인구학적 조건이나 추세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데 있음
- 정책목표가 인구학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 분야 비해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정책이기도 함
 - 정책의 효과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사적인 삶의 개입이 필수적이므로 오늘날과 같이 개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정부의 개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임

- 통계청(2006)의 인구대사전은 인구정책을 국가의 사회경제적 기능이 이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고 국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구의 양과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과정의 3요인인 출생, 사망 및 인구이동 자체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동계획 또는 원칙으로 정의
-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인구정책은 인구규모와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인구변동요인에 영향을 가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정책, 행동계획 등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이삼식, 2013)

□ 인구정책의 유형

- 인구정책의 목표달성이 어려운 이유는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데에도 원인이 있음
 - 출산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노동시장, 보육, 주택, 조세, 양성평등 등 다양한 영역과 관련되어 있지만, 이들 영역의 정책개입을 통해 저출산 문제가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임
- Lutz(2007)는 정책개입의 방식과 관련하여 인구정책을 인구변동을 초래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지향하는 완화와 인구변동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대응을 모색하는 적응(adaption)을 구분하기도 함
- 선진국의 인구환경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이민)이 핵심 이슈임 (May, 2012)
 - 각 이슈는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 인구 고령화가 사망률 감소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출산이 원인
 - 또한 인구 유입국의 관점에서 볼 때 인구이동(이민) 또한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음
-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주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선진국들은 출산율 상승을 직접적인 인구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사례는 찾기 어려움(김종훈 외, 2018)
 -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ICPD)를 통해, 국제 인구정책의 패러

- 다임이 인구통제 정책에서 개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임
- 선진국의 경우 간접적인 조치들을 통해 인구학적 문제, 주로 저출산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고령화 문제는 주로 복지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어짐을 고려할 때 인구정책은 대체로 출산력 증대와 인구가동과 관련된 정책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저출산 대응 정책 또한 주로 간접적 성격의 정책수단들이 활용되어(보육, 교육, 노동시장(일-가정 양립), 주택, 조세, 양성평등 정책) 사실 복지정책과 구분하기 쉽지 않음(Caldwell, Caldwell & McDonald, 2002)
- May(2012)는 인구정책 수단으로 정보의 제공, 법적 규제, 재정 지원, 직간접 투자를 제시하기도 함
- 과거 출산억제 정책이 주도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출산장려 정책에서도 이들 수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 다만, 출산억제 정책과 달리, 출산장려 정책은 임신-출산에 따라 개인이 부담하는 직간접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재정 지원과 보육 등 직간접 투자(서비스 제공)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우해봉 외, 2018)

□ 인구정책의 평가

- 다른 정책 영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정책도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과제임
- Grant et al(2004)은 정책적 개입의 효과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에 의존하고 있어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밝히는 경험적 연구는 어려움을 밝힘
 - 인구학적 지식의 한계 때문에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정책 효과를 정확히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
- 또한 정책적 개입이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적 간극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활용가능한 자료가 단기 정보에 국한되어 있어 인구정책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음

-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 평가(이소영 외, 2017; 2018, 박종서 외, 2019), 인구영향평가(원종욱 외, 2016; 김종훈, 2017; 이병호 외, 2018) 등 인구정책 평가를 시도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2. 영향평가제도의 개념 및 유형

□ 영향평가의 개념

- 노화준(1999)은 정책영향평가를 ‘정책대안을 원인으로 보고 그것의 집행이 정치·경제·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대안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
-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제도는 계획된 정책 수단의 부작용, 비용, 결과 등을 평가함에 있어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분석 접근임(OECD, 2001)
 - 영향평가는 정책의 포용력을 향상시키고, 정책수단과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임
 - 집행된 후에 정책 수단의 실제 결과와 비용을 평가할 때도 적용
- 영향평가제도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혹은 직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책 대안들의 예상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정보 제공
 - 새로운 정책수단의 시행에 따른 예상결과나 현존하는 수단의 실제 결과에 대해 정보를 제공

□ 영향평가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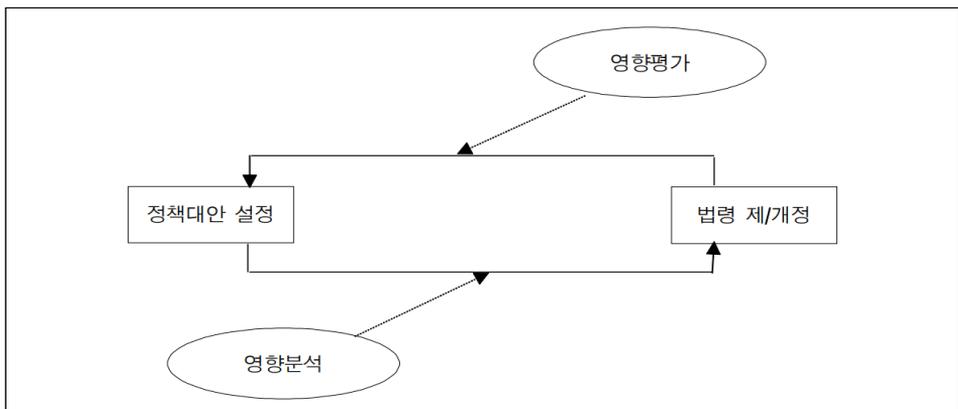
- 영향평가의 목적은 정책수단 그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불필요한 법률제정을 방지함으로써 법적 수단의 양을 줄이고자 하는 것임
- 유럽보건정책센터는 영향평가제도의 목적으로 첫째,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여 이를 활용하고, 둘째, 정책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과 정책결정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셋째,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입안된 정책의 조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제시(European Centre for Health Policy, 1999)

□ 영향평가의 유형

- 정책 대안의 효과(policy impact)에 대한 분석·평가는 사전적으로 실시되는 영향분석(impact analysis)과 사후적으로 수행되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로 구분해서 이해 가능(김종훈, 2017)
 - 이러한 배경하에 넓은 의미의 정책영향평가제도들을 사전(규제)성을 띠거나 환류를 주목적으로 한 사후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로 구분 가능
- 사전 영향분석과 사후 영향평가는 정책순환과정에서 상이하게 활용됨(한국개발연구원, 2018)
 - 사전적으로 수행되는 영향분석은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 일정한 가정에 근거하여 비용과 편익을 예상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이 비용 대비 편익을 근거로 최종적인 안을 확정하는데 기여
 - 사후적 영향평가는 기도입된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사후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단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책대안 설정에 기여

〈그림 2-1〉 정책 순환과정 개념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8)

- 일반적으로 영향평가제도는 크게 규제형과 규범형으로 구분 가능(김성하, 2016)
- 규제는 정량적 지표를 통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실시할 수 없는 구속력을 갖는 영향평가로 대표적으로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있음(이병호 외, 2018)
- 규범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인 성격을 갖는 영향평가로 대표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문화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등이 있음(이병호 외, 2018)

〈표 2-1〉 영향평가의 유형

구분	규제적 성격	규범적 성격
내용	• 평가의 결과가 실시 및 시행계획 등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등 행정 행위에 영향을 미침	•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 등에 있어 합리적인 개선 유도
사례	• 환경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고용영향평가, 기술영향평가, 개인정보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장점	• 효과적 평가 목적 달성 가능 (제도적 틀 안에서 사업 제재) • 대규모 개발/ 시설조성 사업 등에 적용	• 사회적으로 제도 수용에 대한 저항 미비 (강제성 없음) • 제도의 의의/목적/가치 확대
단점	• 평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과다, 사업시행 등에 따른 규제심화로 진입장벽(타 부처, 관계자 등 협의 어려움) • 다른 평가제도와 중복/ 과다 문제 발생	• 평가의 실효성 문제 발생(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실행력 담보 문제)

자료: 김성하(2016),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추이

- 국내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이래로 40여년이 넘게 영향평가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도입 초기에는 주로 사회간접자본 구축과 관련한 대형 재정사업에 적용되다가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규제성 정책영향분석제도가 도입
 - 환경영향평가(1981년), 교통영향평가(1987년), 재해영향평가(1995년) 등이 주요 사례임

- 최근에는 거의 모든 정책 부문별로 구체적인 영향평가제도가 구축·운영되고 있음
 - 규제영향분석(1998년), 부패영향평가(2005년), 성별영향분석평가(2012년) 등
 - 한국의 정책영향분석은 규제영향분석을 제외하면 대체로 영향평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이는 역사가 가장 오랜 환경영향평가가 사전검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영향평가라는 명칭을 사용한데에서 기인(김중훈, 2017)
- 인구영향평가의 제도적 도입 및 시행은 인구영향을 환경영향의 틀 안에서 이해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분으로 구축·운영(1984년)한 사례가 최초 도입 사례임
 - 초기의 인구영향평가 제도는 인구정책과 무관하게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분으로서 도입

〈표 2-2〉 우리나라 주요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사례

구분	내용	근거법	시행시기	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법	1981년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에너지개발
전략 환경영향 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 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환경정책기본법	1991년	도시개발, 산업입지, 산업단지, 에너지 개발, 항만, 도로의 건설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평가법	2001년	
		환경영향평가법	2009년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여 새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감소시키는 방안 마련	(구)환경정책기본법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평가하여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			

구분	내용	근거법	시행시기	평가대상
재해영향 평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조사평가하여 대책 마련	자연재해대책법	1995년	개발사업
인구영향 평가	인구증가에 관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 장단기적으로 인구증가에 미치는 영향,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대안 등	수도권정비 계획법	1984년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주택지조성사업, 산업기지개발사업, 공업단 지조성사업, 재개발사업
	인구 및 사회경제 현황, 인구증가 및 이동에 미치는 영향, 인구집중억제를 위한 방안	수도권정비 계획법	1994년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환경교통재해 등에관한영향 평가법	2001년	2009년 폐지
규제영향 분석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리 분석함으로써 규제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제시	행정규제기본법	1998년	
부패영향 평가	부패유발요인에 대하여 검토	부패방지법	2005년	제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그 위임 에 따른 훈령 예규 고시 공고와 조례 규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운영에 관한법률	2008년	
고용영향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정책이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	고용정책기본법	2010년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
성별영향 분석평가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평 가법	2012년	
건강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상의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평가	환경보건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 계획 및 개발사업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8)

□ 영향평가제도의 성공적 운용 요인

- 영향평가제도의 평가대상과 분야에 따라 제도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이 달라질 수 있음(한국개발연구원, 2018)
 - 부정적인 외부성이 존재하며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사전 영향평가의 경우 수많은 사업에 대하여 영향분석을 수행할 경우 분석평가 주체의 역량 관리, 행정적 부담의 최소화, 영향분석결과의 효과적 관리·집행 등이 영향분석 제도 성공을 위한 핵심 요인임
 - 규제를 평가대상으로 하는 규제영향분석은 다양한 규제방안들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도출하는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규제대안에 대한 과학적인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능력이 제도 성공의 핵심요인임
 - 법령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영향분석은 영향분석이 목표하는 어젠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가 있으며, 조사 및 환류를 위한 부서 간 협조가 제도 성공의 핵심요인이 될 것임
- 과거에 시행된 인구영향평가는 인구집중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성의 최소화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운용
 -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에 국한하여 시행되었으나, 수도권 지역이 점차 확대됨에 2008년 폐지
 - 최근의 인구정책은 인구집중에 따른 부정적인 외부성의 최소화 측면보다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이 강함
- 중앙정부 수준의 인구영향분석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된 제도의 성공가능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름
 - 중앙정부의 인구정책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외부성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우며, 특정 형태의 인구 변화, 예컨대, 이민 유입 증대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젠다도 아님

- 인구구조 변화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인구영향분석을 통한 사전 예방노력의 편익이 충분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 특정 법령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더욱 어려움
- 분석의 신뢰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법령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의 환류를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과 행정적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제2절 해외의 영향평가제도 사례분석

1. 미국의 가족영향평가 제도

1) 도입배경 및 내용

- 1960~70년대 정부의 가족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개별구성원이 아닌 전체 가족의 관점에서 정책을 보는 인식이 증가함
 - 미국의 가족영향평가는 가족 생활의 변화를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가족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또한 그동안의 가족정책이 가족보다는 아동, 노인 등 개인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어 가족의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나타남
- 1970년대에 도입된 미국의 가족영향평가(Family Impact Analysis: FIA)는 정부 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잠재적인 연구 도구로 도입되었음(Dempsey 1981, 이병호 외, 2018)
 - 가족영향평가(FIA)는 가족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서비스 등이 가족관계, 가족의 안전성, 가족 구성원의 책임수행능력에 미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Ooms & Preister, 1988; Bogenschneider, 2002, 김혜정 외, 2021)
 - 정부의 가족 지원정책 확대에 따라 정부의 정책이 실제 시행에 있어 의도 대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지 점검
 - 정책형성 수립단계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관심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관심 등을 유도하였으며,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개별구성원이 아닌 전체 가족의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살펴봄
 - 1973년 백악관의 아동 청소년 상원위원회는 정책형성과정의 한 부분으로 가족영향평가 실시를 권고함
 - 1980년대에는 기존 정책의 가치에 있어 '평가'를 강조함
 - 가족영향평가는 가족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1990년대 이후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대학에서 각 주 정부 지원으로

가족 영향 세미나(FIS: Family Impact Semina) 개최를 통해 확산·체계화 되었음(경기도, 2018; 김혜정 외, 2021)

- 가족영향평가는 정책이 가족 욕구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었는지 확인을 위한 법령 등의 재검토, 청문회·공공포럼 등 질문 및 입증에 대한 준비, 프로그램과 기관·조직 운영 절차에 관한 평가에 활용됨

2) 평가항목 및 지표

- 가족영향평가는 영역별로 정책 및 프로그램이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도구로 쓰여짐
 - 가족영향평가 항목은 7개 영역의 3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음
 - 7개 영역은 가족의 기능 강화와 그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가족 구성원의 소속감과 안정성 보장,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 및 상호의존성 강화, 가족과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가족의 역량화, 가족의 다양성 고려,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임(김혜정 외, 2021)

〈표 2-3〉 미국 가족영향평가 항목

평가영역	평가내용
가족의 기능 강화와 그에 대한 사회적 지원 (Family support and responsi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정책 및 프로그램은 부모나 다른 가족 성원들이 가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가? •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동기를 부여 하는가? •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질병을 가진 가족성원, 피부양 성원을 돌보고 경제적으로 책임지는데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게 하는가? • 비동거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가?
가족 구성원의 소속감과 안정성 보장 (Family membership and st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별거, 이혼을 권장하는가? • 자녀출산, 입양을 권장하는가? 만류하는가? • 부부관계의 헌신과 부모의 의무를 강화하는가? • 가족과 개별 가족성원인 아동이나 성인을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하는 적절한 근거를 사용하는가? • 가족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자 할 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가? • 이혼이나 입양과 같은 가족관계의 주요 변화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며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필요로 함을 인식하고 있는가?

평가영역	평가내용
<p>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 및 상호의존성 강화 (Family involvement and interdepende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성원 개인의 욕구와 가족의 욕구가 호혜적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 특별한 요구를 필요로 하는 가족 구성원(예: 신체적, 정신적 장애 혹은 만성질환)의 돌봄과 관련하여 복잡성과 책임에 대해 인식하는가?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계가족과 확대 가족 성원들도 관여하는가? •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파괴적인 최후의 경우에도 가족의 유대감과 역할을 인정하는가? • 가족생활에 필수적인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예: 지역사회, 이웃, 종교집단 등) • 가족들의 가사분담에 대한 결정을 존중하는가? • 가족에서의 권력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가? • 모든 가족성원의 관점이 반영되는가? • 다양한 가족성원의 경쟁적 욕구와 권리, 이해 등을 평가하고 균형을 잡는가? • 부모의 권리와 가족의 온전함을 존중하는 동시에 가족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 하는가?
<p>가족과 관련기관 간의 협력 및 가족의 역량화 (Family partnership and empower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게 모든 정보와 다양한 선택을 제공하는가? • 가족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가족에게 최종 결정권을 주는가? •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족 자율성이 언급되었으며, 어떤 기준에서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은 가족에 개입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는가? • 전문가들이 수혜대상 가족들과 협조하는가? • 가족의 욕구와 다른 서비스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가? 또한, 가족의 욕구가 가족이 이용하는 다른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통합되도록 고려하는가?
<p>가족과 관련기관 간의 협력 및 가족의 역량화 (Family partnership and empower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실행 위치, 서비스 시간, 접수 양식작성에 가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 정책 수혜대상 가족을 평가절하하거나 낙인찍히거나 모욕당하지 않도록 하는가? •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평가과정에서 부모와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p>가족의 다양성 고려 (Family d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적합한가? (예: 한부모가족, 공동체가족, 핵가족, 대가족 등) • 가족성원들 간의 세대관계와 책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 특정 가족 형태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가? (예: 취업모 중심 정책, 한부모를 위한 정책 등) 불충분한 이유로 다른 형태의 가족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지 않는가? • 프로그램의 효과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인종, 민족과 종교, 문화 또한 지리적인 배경을 가진 가족의 행동과 태도와 가치를 파악하고 존중하는가?
<p>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Support of vulnerable famil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정책과 프로그램은 가장 급박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가족해체의 가능성이 있는 가족과 자원이 가장 부족한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가? • 가족의 문제가 심각해져 위기나 만성적 상황을 초래하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의 노력과 자원 투입을 목표로 하는가?

자료: Ooms(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경기도(2018), 김혜정 외(2021)

2. 독일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1) 도입배경 및 내용

- 독일은 독일 연방인구연구소에서 정책을 기획·평가하고 있음
 - 독일 연방정부는 2012년 ‘모든 연령이 소중하다(Every Age Counts)’는 인구 전략을 채택하고 2015년 이후부터는 각료 회의를 통해 확대
 - 2011년 발표한 인구변동에 대한 종합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책적으로 대응
- 독일의 인구전략은 크게 경제 성장동력 강화, 개방되고 다원화된 사회통합의 제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안정 실현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목표를 지향하고 있음
 - 10개의 분과(working group)¹⁾에서 폭넓고 다양한 의제를 다루며 각 분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 토론을 통해 정책 방안을 제시
 - 각 분과의 보고서들을 종합하여 인구정상회의(Demography summit)를 통해 정책과제 선정
 - 인구문제의 포괄성 및 종합성에 기초하여 연관된 다른 영역들에 대한 인구 요인 고려(이병호 외, 2018)

2) 라인란트-팔츠 지역 운용사례

□ 라인란트-팔츠 주정부의 인구영향평가

- 2012년부터 라인란트-팔츠 주정부 차원에서 인구영향평가(Demography Check)를 시행
 - 라인란트-팔츠 지역은 고령화 문제로 20대 이하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하고 이에 따라 생산가능연령 인구 비율 또한 급속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역 간, 세대 간 행복 수준의 평등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

1) 독일 인구전략 정책을 위한 10개의 분과로는 가족분과, 청년분과, 노동자분과, 노인분과, 치매분과, 지역분과, 일자리 수급 분과, 이주자 분과, 교육분과, 공공정책분과가 있음

- 모든 지역에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추진
- 라인란트-팔츠 지역 주정부의 인구전략은 균형적 지역발전, 세대 간 공존 및 다원성의 존중, 주정부의 역할 및 사회보장 강조, 교육, 노동 산업의 대응 전략 등이 있음
- 인구영향평가 시행에 있어 담당 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표 2-4〉 독일 라인란트-팔츠 주정부의 인구영향평가 관련 문항

체크문항	응답
• 프로젝트가 출생률 증가(Birth development)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미래의 인구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인구의 향후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칩니까? (연령대에 따른 비율)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인구의 지역분포에 영향을 미칩니까? (도시지역 증가, 농촌지역 감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로 인하여 인구 및 연령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는 이주배경 (migrant background)을 가진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전체 인구를 증가시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로 인하여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킵니까? (세금, 사회보장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는 인구의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칩니까? (연령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공급측면에서 세대 간의 상호 영향을 미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사회통합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독일에서의 가족공동체, 가족친화 인프라, 보육, 여가 활동, 육아 편의시설 등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상호 호환성에 영향을 미칩니까? (직장근무 유연성, 집안사업, 파트너쉽 기반의 취업, 육아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이나 훈련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교육이나 훈련 차원에서 인구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체크문항	응답
• 프로젝트로 인하여 일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까? (유연근무제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각 연령에 적합한 정책으로 고안되었습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건강증진 및 직장환경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숙련된 근로자의 유입에 영향을 미칩니까? (교육기관, 이주민 교육,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 참여 환경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노인들의 이동에 익숙한 환경을 제공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간호 및 잠재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일반인들의 복지혜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낮은 진입장벽 등)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 프로젝트가 농촌지역 등에서도 동등한 생활조건이 보장됩니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자료: Prueffragen Demografie check(2014), 이병호 외. (2018)

3. 영국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1) 도입배경 및 내용

- 영국은 환경영향평가와 독립된 구조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1980년대 건강이 공공정책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정책에 있어 선제적으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의 요구가 증가함
- 영국은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영향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 개발
 - 초기 건강영향평가는 영국의 감사원(Health Audit)에서 선도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국가 환경 및 건강영향평가(Nation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and Health Impact Assessment; 1994)가 도입되면서 제도화됨
 - 1995년 국가정책평가 및 보건에 대한 보고서 발표 이후 영국 내 주요 정책 계획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주요 정책으로 도입

- 1999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부의 국민건강계획(Saving lives: our healthier nation)에서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부각
- 영국의 각 지방정부에서도 독립적인 평가로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가이드라인과 도구를 개발

2)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영향평가

- 세계보건기구(WHO)는 World Bank와 함께 보건에 대한 개발정책의 영향을 검토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보건, 환경, 개발 간 연관성 강조를 위해 환경건강영향평가(Environmental Health Impact Assessment, EHIA)라는 용어 사용을 제안
 - WHO에서 1999년 발표한 건강영향평가인 ‘Gothenburg Consensus Paper’에서 프로그램이 특정한 인구집단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효과들을 판단하게 하는 절차(procedures), 방법들(methods), 도구들(tools)의 조합이라고 정의
 - 2005년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를 설치하였으며, 2008년 ‘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 보고서에서 ‘건강 형평성 영향평가(HEqIA: Health Equity Impact Assessment)’를 사용
 - 건강영향평가 중 ‘격차’에 주목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의 목적은 첫째, 의사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건강의 결과를 항상 인지하여 고려하게 하고 둘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결과물들을 사정(査定)하여 파악한 후 결과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정책 수립에 있어 실제적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정책 형성에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정보 제공을 통해 의사결정을 돕는 데 있음(김공현, 2008)
- 건강영향평가는 국민의 건강을 극대화하기 위해 형평성(equity), 민주주의(democracy),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증거의 윤리적 사용(ethical use of evidence)을 바탕으로 함(이삼식, 2007)

- 건강영향평가의 진행절차를 과정별로 살펴보면, 심사과정(screening process), 조사과정(scoping process), 건강영향평가 결과 활용 과정이 있음
- 심사과정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심사과정을 통해 잠재적 건강 영향, 긍정 및 부정적 영향, 잘 알려진 건강 영향 등을 파악하여 정책결정자들이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함²⁾
- 건강영향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입안된 정책에서 관련된 건강영향과 다른 영향을 비교·검토하여 부정적인 건강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 건강영향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조정함

3) 웨일즈 지역 운용사례

- 1999년 웨일즈 의회는 건강영향평가 실무지침 보고서 발간을 통해서 담당 부서 및 전략 수립을 통해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함
 -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고 반대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 시행
 - 정보에 근거한 선택, 경제적 불이익, 문화 및 민족성, 가족 및 아이들, 취약 계층의 주민들, 성별 및 성적 지향 등을 포함하고 있음
- 건강영향평가의 토대를 이루는 원칙은 개방성, 참여, 지속가능성, 공정성 등이 있음
 - “긍정적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및 환경적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함께 작용하는 웨일즈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삼음
 -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개념, 과정,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실무 지침으로 개발되었으며, 다양한 기관들에 형식을 제공

2) 조사과정에서 조사방법으로 긴급 건강영향평가(rapid health impact appraisal), 건강영향분석(health impact analysis), 건강영향검토(health impact review) 중 하나를 선택함. 긴급 건강영향평가는 다수의 전문가, 정책결정자 등에 의해 정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건강영향분석은 정책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으로 정책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며, 건강영향검토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영향에 대해 납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웨일즈 건강증진 및 불평등 지침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실무 지침은 웨일스 하원 정부에 의해 설립된 웨일스 건강영향평가 지원국에 의해 작성되었음

〈표 2-5〉 계획수립 초기 단계 체크리스트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명 : • 평가 일시 : • 작성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의 필요로 프로젝트를 다룰 것인가? (예를 들면, 전체 행정지역, 지정된, 우선시되는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가 당신 조직의 우선사항 및 정책과 일치하는가?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에 근거한 선택의 증진에 대해 어떠한 고려사항이 주어졌는가? (서비스의 위치, 실무자의 성별 등이 선택들에 포함될 것이다. 정보가 산출되는 곳에서 매체 및 언어 그리고 모든 그룹들에 대한 접근가능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7)

〈표 2-6〉 그룹별 잠재적 건강영향 체크리스트 양식

• 물리적 불리상황: 저소득(자동차에 대한 접근 고려), 실직, 집 없는 사람 등 포함		
증진	제한	변화없음
※ 주:		
• 문화 및 민족성: 집시 여행자 및 영어 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포함		
증진	제한	변화없음
※ 주:		
• 아이들이 있는 가족: 임신 여성, 어린이 및 10대 청소년들 포함		
증진	제한	변화없음
※ 주:		
• 취약 계층 주민: 신체적, 정신적 또는 학습 장애자, 노약자 및 간병인 포함		
증진	제한	변화없음
※ 주:		
• 성별 또는 성적 지향성: 둘 중 하나가 서비스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증진	제한	변화없음
※ 주:		
• Checklist를 완성하면서, 고려되지 않았던 그룹의 필요성이 있는가?		
	예	아니요
• 만일 “예”라면, 어떠한 그룹이며 어떻게 이를 바로잡을 것인가?		
• 불리한 상황의 주민들에 대한 프로젝트의 영향은 어떻게 모니터링 될 것인가?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7)

〈표 2-7〉 웨일즈 건강 및 복지 결정요인 체크리스트

구분	내용	
1. 생활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식 섭취 음주, 흡연, 처방되지 않은 약물의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 운동 성적 활동 기타 위험 수반 활동
2. 건강에 관한 사회적 및 공동체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구성 및 역할 국민의 권위 및 영향력 사회적 지원 및 사회적 네트워크 친밀한 이웃관계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공동체에서의 분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감 사회적 단절 동료와의 경쟁심 공동체의 주체성 문화적 및 정신적 풍조 인종 차별주의 기타 사회적 소외
3.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 환경 주택 공급 실내 환경 소음 공기 및 수질 지역의 흡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 안전 냄새/악취·쓰레기 처분 도로 위해성 상해 위해성 놀이 장소의 질 및 안전성
4.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직 소득 경제적 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의 형태 직업장 상태
5. 서비스의 이용 및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 서비스 기타 복지 의료 서비스 직업 조언 상점 및 상업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중 시설 운송 교육 및 훈련 정보 기술
6. 거시 경제, 환경 및 지속가능성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정책 총 국내 생산 경제적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물학적 다양성 기후

출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7)

제 3 장

인구영향평가 관련 제도 분석

제1절 중앙정부 관련 제도

제2절 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사례분석

제3장 인구영향평가 관련 제도 분석

제1절 중앙정부 관련 제도

1. 인구영향평가 제도

□ 제도 기반

- 인구영향평가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2조(인구영향평가)에 근거하여 1984년 7월 도입되었음(김혜정 외, 2021))
 - 그러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1994년)에 따라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가 2001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다시 실시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2009년)에 따라 폐지
 - 현재는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의 평가 항목 중 인구 및 주거 항목으로 축소되어 있음
-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영향평가는 없으나, 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인구관련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함
 - 이에, 한국보건사회연구소(2007)가 저출산·고령사회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을 연구함(경기도, 2018)
 -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 대상으로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별 사업 및 정책과제들의 결과 평가(보사연, 2017)
 - 2016년부터는 핵심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 추가 시행

□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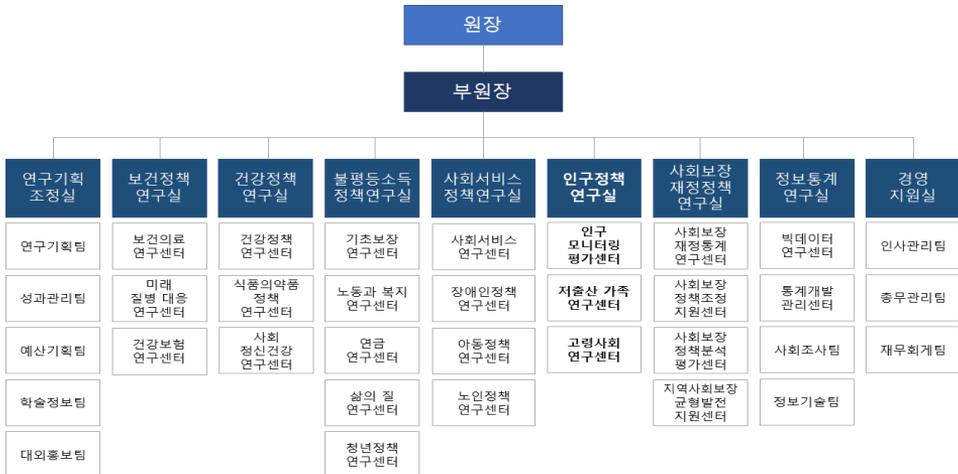
- 성과평가는 과제·사업의 집행도 측정, 정책성과 및 달성도 평가, 새로운 목표 설정 등으로 이루어짐

- 과제 및 사업의 집행도 측정을 위해서 시행 계획상의 예산과 정책자원 투입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개별 정책·사업별로 설정된 목표수준(성과 지표)와 비교하여 달성도 측정·평가
- 평가된 결과를 통해 새로운 성과지표의 목표 수준을 설정

□ 추진체계

- 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는 인구정책연구실 내에서 수행하고 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소속으로 신설된 인구영향평가센터는 현재, 인구정책연구실에서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로 운영하고 있음
 - 센터장1명, 연구위원 2명, 부연구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의 주요 업무
 -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는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의 내·외생적 요인과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 실증 연구, 평가 방법 연구
 - 인구변동 모니터링 지표 개발, 체계구축, 모니터링 수행, 정책평가
 - 인구구조와 분포의 특성 및 변동 추이 분석, 인구정책 의제 개발

〈그림 3-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직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2. 고용영향평가 제도

□ 제도 기반

- 고용영향평가(Employment Impact Assessment)는 2009년 「고용정책 기본법 제 13조」 및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2조~23조」를 근거로 2010년부터 각 부처의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시행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 법, 제도 등의 수립 및 추진을 통해 예상되는 고용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목적 달성 및 양적·질적 일자리 제고를 목적으로 함
 - 평가 대상은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 지출사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제도·규제 개선 정책 등
 - 평가 절차는 대상 선정 후 평가 실시, 부처 협의 후 결과 통보, 정책반영 후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짐

〈표 3-1〉 고용영향평가 평가 절차

구분	내용
대상선정	대상과제 선정(국민제안, 전문가 및 부처 협의)
평가실시	고용영향평가센터를 중심으로 평가 실시
부처협의	평가결과 관련 부처 의견 수렴
결과통보	최종결과 관계부처 통보, 차관회의, 고용정책심의회 보고
정책반영	각 부처는 정책제언 반영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고용노동부에게 제출
모니터링	정책 반영현황 모니터링(부처 자체점검, 현장 모니터링 실시)

출처: 고용영향평가센터(<https://www.kli.re.kr/>)

□ 추진내용

- 고용영향평가는 기초조사와 전체 열개 구성, 양적평가, 질적평가, 평가 결과의 결합과 정책 권도의 도출의 네 가지 요소가 핵심 내용임
 - 양적 고용 효과 측정범위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류되며, 직접효과는 사업, 정책, 제도, 법의 시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효과이며,

간접효과는 사업, 정책, 법, 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타 산업 및 경제 전체에 발생하는 효과임

- 질적 고용효과는 고용의 질 제고, 고용 확대, 인력 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 등이 있음

〈표 3-2〉 고용영향평가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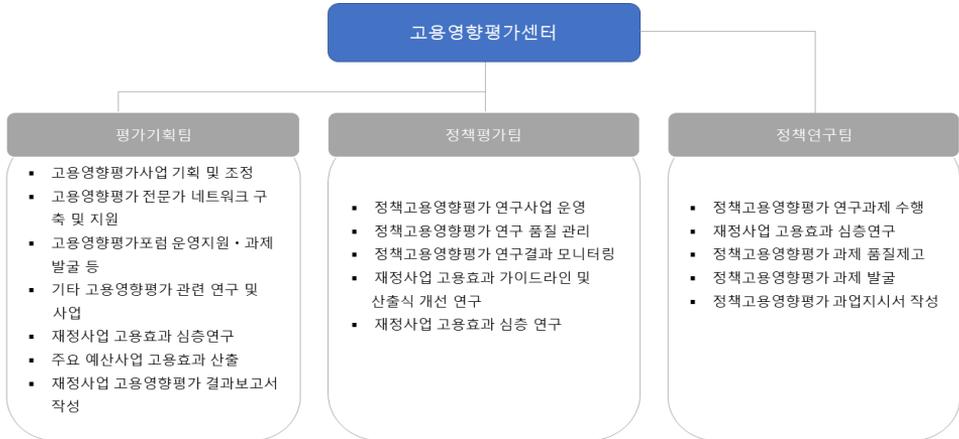
분류	세부 평가 및 권고 항목
고용확대	내국인 고용, 미취업자 우선 고용, 사업계획서 작성 방식 (사업일정, 사업비책정방식), 고용 소외계층의 고용(청년, 여성, 고령), 초과근로시간과 직장 나누기
고용의 질 제고	직접고용의 안정성(고용계약 형태와 사업 후의 일시적 실업), 임금수준(유사(민간) 사업에서의 기능별 임금수준 비교), 직접고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근로 안전 예산확보
인력수급	노동시장 교란방지(타 사업장 고용의 교란), 교육훈련을 통한 수급
고용의 지속가능성	사업, 정책, 법 그리고 제도가 실제로 운용된 이후에도 (정부의 지원 없이) 고용이 유지되는 수준
평가대상의 특수성	-

출처: 고용노동부(2013); 박진경 외(2017)

□ 추진체계

- 고용영향평가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에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음
 - 고용영향평가센터는 평가기획팀, 정책평가팀, 정책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가기획팀은 고용영향평가 기획 및 조정, 고용영향평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정책평가팀은 정책고용평가 연구사업 운영, 연구 품질관리, 연구결과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정책연구팀은 정책고용영향평가 연구 과제 수행 및 과제 발굴, 과업지시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3-2〉 고용영향평가 센터 조직도



출처: 고용영향평가센터(<https://www.kli.re.kr/>)

3. 성별영향평가 제도

□ 제도 기반

-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음
 - 정부의 주요 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정부 정책에서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 제10조의2, 영 제7조에 의해 특정영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대상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며, 대상 정책은 시행 중인 법령, 중앙 및 지방자치

단체 소관 정책·공공기관 사업 중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정책 및 사업임

□ 추진내용

- 성별영향평가지표는 크게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평가와 정보홍보사업에 대한 성별평가가 있음
 -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성별통계가 주요 평가 지표임
 -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지표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전략 및 중점과제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임
 -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는 정책환경의 성별특성, 성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정책개선 및 환류)이 주요 평가 지표임
 - 정보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표현·비하·외모지상주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가족에 대한 고정 관념 및 편견, 성별 대표성 불균형이 있음

〈표 3-3〉 성별영향평가 지표

분석 대상	분석평가항목	점검 point
법령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구분 조항이 있습니까? • 특정 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에 사용된 용어 중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이 있습니까? • 법령상의 특정 조치가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것이 있습니까?
	성별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한 규정이 있습니까?
	성별균형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등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까? •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이 특정 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분석 대상	분석평가항목		점검 point
	성별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
계획	비전과 목표	성별로 다른 영향 발생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지와 성별로 다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
	전략 및 중점과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 점검 •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과 목표, 전략 및 중점과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과제 신설·수정 등 개선방안 제시 		
사업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생물학적)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배경, 거주지역, 사회적 관계망, 폭력 등 안전문제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성별 고정관념 등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 고용형태, 직위, 수입, 근로조건 등 성별에 따른 경제적 차이로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 남녀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정책 수요가 발생하는 지 점검
		사업수혜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혜자 성비가 사업 대상자와 비교해 형평성이 있는지 점검 • 사업수혜발생에 있어서 성별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배분에 있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하였는지 점검 	
	성평등을 위한 조치사항 (정책개선 및 환류)	법령(지침 포함)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성인지 예산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업내용·수행방식 등 반영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에 대한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내용·수행방식(기타 제도 개선 포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등 	

분석 대상	분석평가항목	점검 point
정부 홍보 사업	성역할 고정 관념 및 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있는가? •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고 있는가?
	성차별적 표현/비하/ 외모지상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열등하게 묘사하고 있는가? • 외모지상주의, 외모차별·희화화 혹은 신체를 부각해 성적 대상화하는 표현이 있는가?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특성을 특정 성별로 구분하여 표현하는가? • 부부,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의 폭력을 개인 간의 문제 혹은 사소한 문제라고 가정하고 있는가? • 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가?
	가족에 대한 고정 관념/편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이미지를 특정유형으로만 한정하고 있는가? • 가족 내 역할을 성별에 따라 고정하고 있는가?
	성별 대표성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성별·연령에 치우쳐 있거나 배제하고 있는가?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추진체계

- 성별영향평가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에는 성별영향 평가와 특정영향평가가 있음
 - 성별영향평가 검토 및 검토 의견을 통보하고 부처별 성평등 목표를 고려하여 성별영향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합의하며,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
 -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반영결과를 점검
 - 종합 분석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를 국회 제출·공포하며, 필요에 따라 정책 개선·권고 가능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주체 실시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며,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함
 - 대상정책의 심층적 평가를 위해 전문연구기관 등에 위탁 가능함

-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국민 및 NGO 대상 과제발굴 공모,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및 조정을 통해 대상정책을 선정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

〈표 3-4〉 성별영향평가 운영체계

평가대상		각 기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 평가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실시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평가서 검토를 위한 자료 제출(요청 시) • 반영계획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검토 및 검토의견 통보 • 정책개선 실적 관리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부처별 성평등목표를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협의
	지방자치 단체	<사업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실시 - 체크리스트와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제출 • 반영계획 제출(개선의견을 받은 경우) <성별영향평가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및 정책개선 실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교육 프로그램 운영
특정 성별영향 평가	중앙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정책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 반영결과 점검
	지방자치 단체	<성별영향평가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정책개선 추진 및 반영결과 점검 <사업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정책에 대한 자료 제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및 반영계획 통보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다음년도 2월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국무회의) • 국회 제출 및 공표

출처: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제2절 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사례분석

1. 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현황

□ 인구영향평가 현황

- 부천시가 2017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2018년 제도를 도입함
 - 부산시는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인구영향평가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 추진
 - 부천시와 광양시('17)는 자체적으로 인구영향평가 시행
- 경기도, 경상남도, 부산시, 서울시는 인구영향평가 관련 조례 규정 제정

〈표 3-5〉 자치단체 인구영향평가제도 현황

조례	지자체	제정일	비고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경기도	17.06.13	별도 조례(21.5.20 시행)	
	경상남도	21.05.03		
	서울특별시	21.12.30	별도 조례(23.1.1 시행)	
	부산광역시	21.07.14	별도 조례(22.1.15 시행)	
인구정책 지원 관련 조례	강원도	원주시	18.02.23	
	경기도	포천시	19.10.30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20.12.23	
		수원시	21.05.12	
	경상남도		21.05.03	*인구정책 기본조례
	경상남도	김해시	18.08.10	
	경상북도	상주시	18.08.17	
		울진군	19.06.03	
		포항시	21.02.09	
구미시		21.06.02		

조례	지자체	제정일	비고	
	서울특별시	21.12.30	*인구정책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21.07.14	*인구정책 기본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20.05.29	
		동구	21.11.24	
	대전광역시	서구	20.12.22	
	인천광역시	계양구	19.12.20	
	전라남도	고흥군	21.08.09	
	전라북도	익산시	20.12.30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저출산 관련 지원 조례	경기도	17.06.13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경기도	부천시	17.10.11	*아기환경기본조례
		남양주시	19.10.10	*저출산고령사회정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양시	20.07.10	*저출산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	20.12.28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21.06.10	*저출산고령사회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2. 경기도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 제도 기반

- 경기도는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의 3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함 (2021.05.20.)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인구영향평가 제도 추진을 위해 필요사항을 조례로 규정
 - 인구영향평가에서의 도지사의 책무 및 시민의 책무, 인구영향평가 주체 및 대상,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등을 조례로 규정

〈표 3-6〉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 구조와 경기도민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2. “인구정책사업”이란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경기도가 수립하는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상의 사업을 말함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는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인구변화에 따른 영향 및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영향평가의 지표를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시행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4조 (시민의 책무)	도민은 출생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도가 시행하는 저출생·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조항		내용
제2장 인구 영향 평가의 실시	제6조 (인구 영향평가 주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함 ②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지원 2. 인구영향평가 대상 공모 3.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 모니터링 4. 인구영향평가센터 관리·감독 5.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인구 영향평가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지원정책 2.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 지원정책 4. 그 밖의 저출생·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정책 ②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할 수 있음
	제8조 (시범사업)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10조 (인구 영향평가 센터 설치 및 기능)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도지사는 인구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영향평가 실시 2.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공모(유관기관 및 시·군 의뢰과제를 포함) 3.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발주 및 관리 4. 인구영향평가 관련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인구영향평가 관련 외부기관 협업 6. 인구영향평가 수행 결과보고 7. 센터 운영실적 보고 8.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추진내용

- 경기도의 인구영향평가제도는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중에서 핵심사업에 대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구정책의 실태 및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것임

- 평가대상은 저출생, 주거·일자리, 고령화 3개 영역이며, 평가방법은 사업 부서의 자체진단 결과를 토대로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부서의 추가 의견 및 향후 계획을 작성함

〈표 3-7〉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방법

2021년		2022년	
전문가 평가 방식	각 분야별 1인 시행	전문가 평가 방식	평가의 공정성을 반영하여 경기도 이외의 기관 전문가 섭외 및 복수의 전문가에 대한 평가 실시
성과지표	사업부서 실적 위주의 정량평가로 운영	성과지표	성과지표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선 방안 논의 후 사업부서와 업무협약의 예정
중장기평가 체계구축	없음	중장기평가 체계구축	분야별 결과지표 설정 후 매년 측정 → 변동 결과 값 설정 후 분야별 사업 효과성 파악

출처: 경기도(2022), 2022년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추진계획

- 매년 사업 분야별 결과지표를 설정 후 관리하여 인구정책의 효과성 파악
 - 사업실적 위주의 지표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지표 설정 및 전문가의 자문과 사업부서의 업무 협의를 통한 실적 관리
 - 사업부서에서 인구영향평가 자체 진단서 및 사업설명서 작성, 전문가 및 분과위원회를 통한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 인구 정책위원회를 통한 인구정책 효과성 검토

〈표 3-8〉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운영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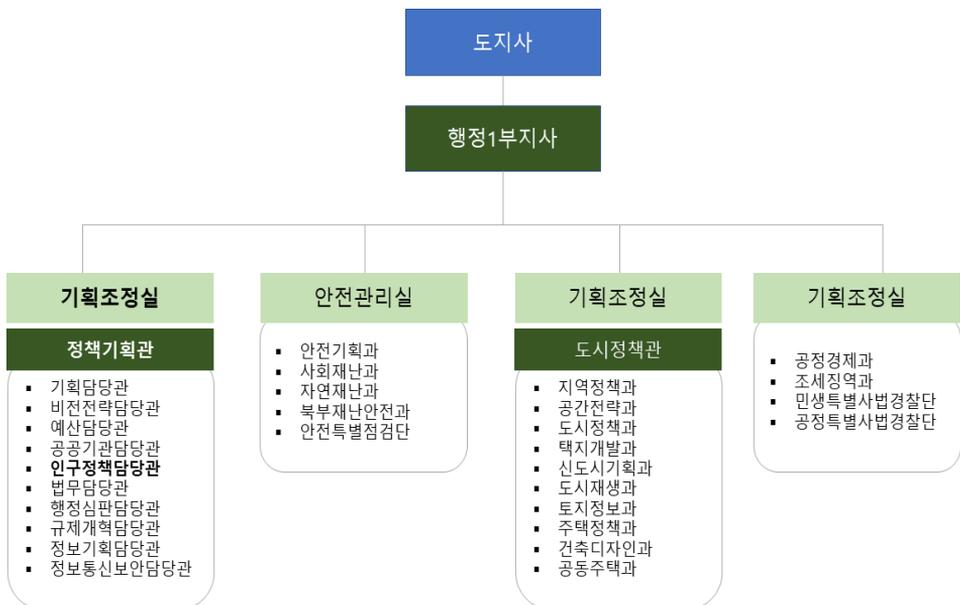
구분	쟁점	과제지정
전문가+인구정책조정위원회 (보육·교육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예산 효율성, 개선 효과, 검토 사항, 정책 권고안 등을 도출 	저출생
전문가+인구정책조정위원회 (주거·일자리분과)		주거·일자리
전문가+인구정책조정위원회 (고령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지표 설정을 통한 중장기적 인구정책의 효과성 파악 및 향후 인구정책 제안 	고령화

출처: 경기도(2022), 2022년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추진계획

□ 추진체계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는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음
 - 인구정책담당관은 인구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 시책 발굴 및 시범사업 추진, 인구영향평가 인구백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그림 3-3〉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추진체계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경기도 인구정책의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현재, 인구정책담당관의 정·현원 현황은 담당관 1명, 팀장 3명, 주무관 10명으로 구성
 - 인구정책담당은 크게 인구정책, 인구통계, 인구사업으로 나눌 수 있음
 - 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 조정, 첫만남이용권 사업, 인구영향평가, 예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구통계팀은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인구사업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인구교육, 사회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표 3-9〉 경기도 인구정책 담당 업무 분장

구분	담당업무	비고	
인구정책 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 인구정책담당관 업무 총괄	
	인구정책팀장	• 인구정책팀 업무총괄	
	주무관	• 인구정책조정 등	
	주무관	• 첫만남이용권 사업 등	
	주무관	• 인구영향평가	
	주무관	• 서무, 예산	
	인구통계팀장	• 인구통계팀 총괄업무	
	주무관	•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무관	• 지역내총생산(GRDP) 추계	
	주무관	• 경기통계연보	
	인구사업팀장	• 사회조사, 사업체조사	
	주무관	• 인구사업팀 업무총괄	
	주무관	• 지방소멸대응 기금 운영	
	주무관	• 인구교육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평가지표

- 경기도는 사업단위 부서에서 5대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된 자가 체크리스트를 자체적으로 작성
 - 성별, 연령, 가족, 여성, 일가정 양립, 인구증감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에 대해 실무자가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에 전문가 평가 의견을 피드백 받음

〈표 3-10〉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자체진단서 작성서식(2022년)

자체 진단서				
인구 영향 평가	성	1) 사업이 성별 인구구조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남성 <input type="checkbox"/>	여성 <input type="checkbox"/>	
	• (사업이 성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내용 서술)			
	연령	2) 사업이 연령별 인구구조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영유아(0~4세) <input type="checkbox"/>	어린이(5~17세) <input type="checkbox"/>	청소년(18~24세) <input type="checkbox"/>
		청년(25~39세) <input type="checkbox"/>	중장년(40~64세) <input type="checkbox"/>	노인(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 (사업이 성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내용 서술)		
	※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영유아를 제외함		※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	
	가족	3) 사업이 특정 가족·가구 형태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한부모가정 <input type="checkbox"/>	조손가정 <input type="checkbox"/>	다자녀가정 <input type="checkbox"/>
		1인 가구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다문화가정 <input type="checkbox"/>
		• (사업이 특정 가구에 미치는 영향 서술)		
※ “한부모가정”이란 모가 세대주인 모자가족 또는 부가 세대주인 부자가족을 말함		※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 세대를 말함		
※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함				
여성	4) 사업이 해당 여성에게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난임·불임 여성 <input type="checkbox"/>	임산부 <input type="checkbox"/>	미혼여성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여성 <input type="checkbox"/>	워킹맘 <input type="checkbox"/>		
	• (사업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 서술)			
※ “난임”이란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		※ “경력단절여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함		

일가정 양립	5) 사업이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근로시간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여가활용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가사노동 경감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 (사업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서술) ※ 근로시간에 영향을 주는 사업: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사업을 포함하며, 이에 대한 근로조건, 사용형태,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금전적 지운 등을 아우른다. ※ 가사노동 경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 근로자를 위한 가사도우미사업이나 보육사업을 포함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보육확충 등 교육과 육아에 관련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및 공공복지시설 사업을 포함한다.		
인구 증감	6) 사업이 인구증감을 이끌 수 있는가? (해당사항에 ☑)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혼인증감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출산증감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인구이동(전입·전출)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 (사업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 서술) ※ 가령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관련 사업은 미혼의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혼인 증감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역시 대상이란 점에서 출산증감에도 영향을 줌 ※ 가령 "귀촌 활성화 및 자원"과 같이 사업 목적이 지역의 인구유입을 도모하는 것이면, 인구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체크		
사업 평가	총 평		
	인구영향에 긍정적인 측면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
	인구영향에 부정적인 측면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
실행전략	애로사항, 문제점, 한계		
	개선방안		
<전문가 검토 의견에 대한 부서 의견 작성>			
개선과제에 대한 부서 의견	조치의견	자체개선계획 있음	<input type="checkbox"/>
		중장기 반영	<input type="checkbox"/>
		불수용	<input type="checkbox"/>
		추가 의견 요청	<input type="checkbox"/>
검토 의견			

출처: 경기도(2022), 인구영향평가 작성서식

〈표 3-11〉 전문가 평가의견 서식

사업명	000 사업
I. 정책의 인구 특성 분석	
1. 사업이 성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항목	(인구영향) 점검 포인트
성	◇ 점검 포인트 작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점검 포인트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개선 방안 등 작성
2. 사업이 연령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항목	(인구영향) 점검 포인트
연령	◇ 점검 포인트 작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점검 포인트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개선 방안 등 작성
3. 사업이 특정 가족·가구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항목	(인구영향) 점검 포인트
가족·가구	◇ 점검 포인트 작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점검 포인트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개선 방안 등 작성
4. 사업이 해당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항목	(인구영향) 점검 포인트
여성	◇ 점검 포인트 작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점검 포인트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개선 방안 등 작성

5. 사업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항목	(인구영향) 점검 포인트
일가정 양립	◇ 점검 포인트 작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점검 포인트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개선 방안 등 작성

6. 사업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항목	(인구영향) 점검 포인트
인구증감	◇ 점검 포인트 작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점검 포인트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개선 방안 등 작성

□ 총평

사업평가 및 실행전략의 적설성 검토	인구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도	<input type="checkbox"/> 매우높음 <input type="checkbox"/> 높음 <input type="checkbox"/> 보통 <input type="checkbox"/> 낮음 <input type="checkbox"/> 매우낮음
	인구정책에 미치는 수준	<input type="checkbox"/> 직접영향 <input type="checkbox"/> 간접영향
	- -	
사업 총평	- -	
정책 권고사항	- -	
작성자		

출처: 경기도(2022), 인구영향평가 작성서식

□ 부천시 인구영향평가

-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부천시 인구영향평가는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제7조 인구정책에 근거하고 있음
 - 부천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천시 인구영향평가 운영규정(2017.01)」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구정책을 개발하고 인구영향평가를 운영
 - 인구정책추진단장이 평가주체가 되어 인구영향평가 추진 실적과 정책 개선 실적을 점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보고 및 전 부서에 통보
 - 부천시 인구영향평가는 저출산과 같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과 보육 중심으로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아기환영부천’을 위해 주거, 교육, 일·가정 양립, 고용, 문화, 인식 개선 등 정책 추진
 - 부천시 인구영향평가는 부서 간 평가로 정량적 평가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수립 또는 부서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표 3-12〉 부천시 인구영향평가(예시)

연번	구분	조례명 (요청사항)	추진실적		여부
			권고내용 및 조치계획		
1	행정 지원과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생후 1년 미만 자녀 육아시간 (1일 1시간)	수용	일부 수용
			만 12세 이하 자녀 돌봄 휴가 (연 2일)	수용	
			자녀사망 경조사 휴가 (1일 →5일)	불수용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서약서」 운영	서약서(안) 수용 및 배부 완료		수용
3	참여 소통과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신설		수용

연번	구분	조례명 (요청사항)	추진실적		
			권고내용 및 조치계획	여부	
4	여성 청소년과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운영조례	경로우대 적용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 신설	수용	
5		부천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다자녀가정 감면 대상 확대	수용	
6	문화 예술과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북사골문화센터 체육시설 경로우대 적용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감면대상 신설 → 2017.8. 시설관리공단 협의 추진(지연)	불수용	
7		부천통합박물관 등 문화시설건립 시 아기환영 편의시설 필수 설치	실시설계 완료시까지 아기환영 편의시설 반영 조치 ※ 키즈카페는 체험교육실 설치로 대체 예정	수용	
.....					
14	대중 교통과	가족친화적 대중버스 운용	미취학아동 동반 부모 버스비 무료	불수용	일부 수용
			대중교통약자를 위한 운전기사 안전 교육 수용	수용	
15	원도심 지원과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연동 인센티브를 위해 부천시 장기 근속 가산점 추가	입주자우선공급 기준(안) 수정 및 LH 협의		수용
16		아기환영 및 청년 주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가산점 요청			수용
17	문화 예술과	부천통합박물관 등 문화시설건립 시 아기환영 편의시설 필수설치	실시설계 완료시까지 「아기환영 편의시설」 반영 조치		수용
18	복지 정책과	동북지협업체 업무 매뉴얼 등 아기환영정책 지속 권장	다자녀가정 백일 떡 지원 사례 전파(업무 매뉴얼 수록) 예정		수용
19	보육 아동과	어린이집 방학기간 운영 협조	어린이집은 연중 계속 운영 원칙으로 별도 방학기간 운영 불가(해당없음)		불수용
		여름/겨울방학 돌봄기간 일치 운영			
20	부천문화원/ 송내청소년 문화의집	작은결혼식장 운영 등 요청	작은결혼정보센터 등록 완료		수용
		작은결혼정보센터 등록			
		작은결혼식장 대관 및 운영			

출처: 경기연구원(2018), 경기도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3. 부산시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 제도 기반

- 부산시는 인구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인구영향평가 조례 제정 (2021.07.14.)
 - 인구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인구영향평가를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추진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 실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3-13〉 부산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 실현으로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인구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에서 정책·계획·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지역의 인구구조와 부산광역시민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2. “인구정책”이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함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은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인구 변화에 따른 영향 및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행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③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제4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출생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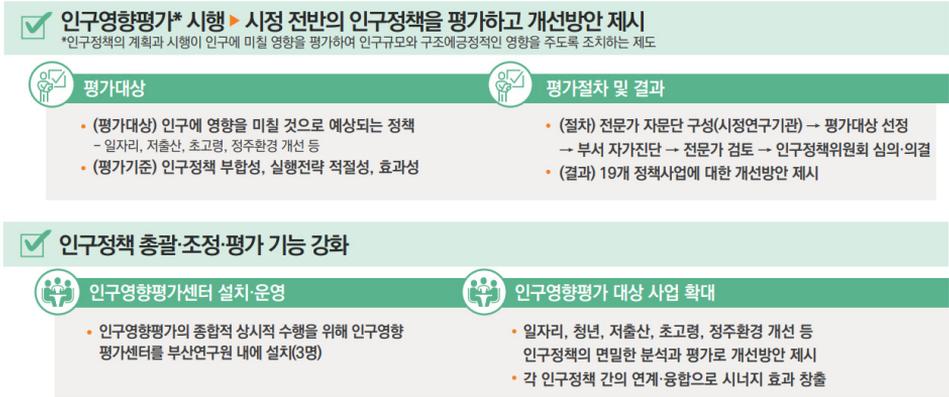
조항	내용
제5조 (인구영향평가 주체)	① 시장은 인구정책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함 ②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지원 2. 인구영향평가 대상 공모 3.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 모니터링 4. 인구영향평가센터 관리·감독 5.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인구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제7조 (인구영향평가 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영향평가 실시 2.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공모(유관기관 및 구·군 의뢰과제를 포함) 3.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발주 및 관리 4. 인구영향평가 관련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인구영향평가 관련 외부기관 협업 6. 인구영향평가 수행결과 보고 7. 센터 운영실적 보고 8.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추진내용

- 부산시는 인구정책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시정 전반의 인구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평가 대상은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으로 일자리, 초고령, 저출산, 정주환경개선 등이 있음
 - 평가 기준은 인구 정책의 부합성, 실행전략의 적절성 및 효과성임
 - 절차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시정연구기관)하여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부서의 자가진단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인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 이를 통해 정책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그림 3-4〉 2021년 부산시 인구정책 추진현황



출처: 부산광역시(2022. 01),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 추진체계

- 부산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기획관 인구정책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인구정책팀의 정·현원 현황은 팀장 1명, 주무관 3명으로 구성
 - 부산시 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인구정책 관리 및 조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 인구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부산연구원 지원 및 지도·감독, 정책 실행제 운영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그림 3-5〉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추진체계



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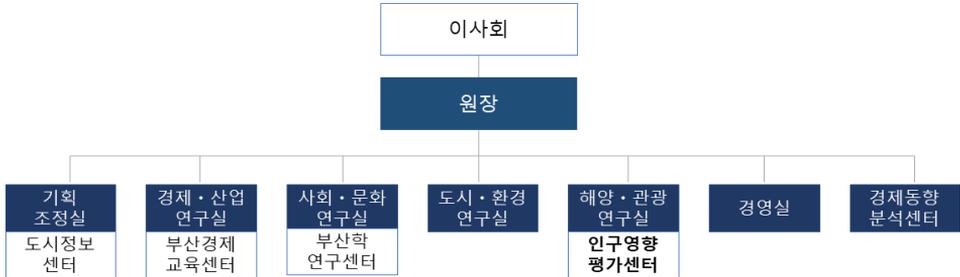
〈표 3-14〉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담당업무 분장

구분		담당업무	비고
기획관 기획담당관	인구정책팀장	• 인구정책팀 업무 총괄	
	주무관	• 인구정책팀 주요업무보고, 인구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 위원회 운영, 인구정책 관리 및 조정,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인구영향평가센터)	
	주무관	• 부산연구원 지원 및 지도·감독, 인구정책 관련 법령(조례 등) 제·개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	
	주무관	•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심의위원회 운영, 부산연구원 현안 연구과제 관리, 인구정책 동향 및 통계 관리·분석, 인구의 날 행사, 인구 교육에 관한 사항, 정책실명제 운영, 팀내 시의회, 예산 및 서무 관련 업무 등	

출처: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 또한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 총괄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운영
- 부산연구원(해양·관광 연구실)에서 2022년 1월 17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운영
 - 설립 목적은 부산시의 인구정책 계획 및 시행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유도하고, 인구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관련 사업의 인구구조 개선효과 증대 및 신규사업 발굴 및 정책지원, 평가지표 개발 등임
 - 주요 업무는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 부산시 인구변동 D/B구축, 인구영향평가 대상사업 평가, 인구영향평가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구감소 지역 정책사업 발굴 및 자문 등이 있음

〈그림 3-6〉 부산시 인구영향평가 추진체계



출처: 부산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bdi.re.k>)

4. 서울시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 제도 기반

- 서울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제도 조례 제정 (2021.12.30.)
 - 급격한 인구규모 및 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우려에 따른 적정인구 유지 및 인구구조 변화 속도 조절 필요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구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질적 검증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인구정책들의 유기적 연계 및 정책 평가·환류 체계 구축 필요

〈표 3-15〉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2023.1.1. 시행)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정책수립단계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항 사항 규정,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인구영향평가”란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인구 구조와 서울특별시민의 일상적 삶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함 2. “인구정책”이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정책을 말함

조항	내용
제3조 (시장의 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서울특별시장은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구 구조에 미칠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해야 함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영향평가의 지표를 개발하며, 이에 필요한 실시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함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제4조 (인구영향평가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시행계획 2.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3.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4.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정책 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정책에 대하여 연계계획을 세우고 공표할 수 있음 ③ 인구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 및 사회·경제 현황 등 정책 환경 2. 인구정책이 인구의 증감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④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제5조 (시범적용)	<p>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시범적용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p>
제6조 (인구영향평가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구정책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인구정책을 계획하거나 실시하기 전에 인구영향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인구영향평가 담당 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함 ②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그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함 ③ 평가부서장은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인구정책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구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부서장에게 보내야 함 ④ 평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와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음 ⑤ 사업부서장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의 개선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제7조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p>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추진 실적과 인구정책의 개선 실적을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p>
제9조 (인구영향평가 교육)	<p>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게 인구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p>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추진체계

-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시정연구담당관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음
 - 시정연구담당관은 시정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시정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별명에 관한 사항,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구정책은 인구변화대응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인구변화대응팀의 정·현원 현황은 팀장 1명, 주무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대응변화팀은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전략 발굴·검토,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인구변화 대응 TF 및 위원회 구성·운영, 인구변화대응 관련 민간 협력, 인구통계·자료관리, 인구변화대응관련 조례 및 법·제도 개선사항 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림 3-7〉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추진체계



출처: 서울시청홈페이지(<https://newsearch.seoul.go.kr/>)

- 현재 인구영향평가제도 정책 연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 인구변화 현황분석, 서울시 인구영향평가(안) 설계 및 인구영향평가 운영(안) 및 추진방안

- 2022년 하반기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및 2023년 전면도입 운영방안 설계, 제도 정착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확산 로드맵) 작성 계획(서울시 기획조정실, 2022)

〈표 3-16〉 서울시 인구정책 담당업무 분장

구분	담당업무	비고	
시정연구 담당관 인구변화 대응팀	인구변화 대응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대응팀 업무 총괄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전략 발굴·검토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중장기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인구변화대응 TF 및 위원회 구성·운영 총괄 •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 도시경쟁력 지수 관리, 경쟁력 제고 전략 검토 • 국내·외 정책 동향 파악 및 분석, 정책 발굴·검토 • 타 팀원에게 속하지 않은 업무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변화대응 관련 민간 협력(공모전, 여론조사, 토론회 등) • 도시경쟁력 지수 및 자료 관리, 대외협력 지원 • 인구변화대응위원회 및 TF 회의·운영 지원, 위원 관리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운영 지원(연구용역, 시범적용 추진) • 인구통계·자료 관리(통계, 연구·정책자료, 언론보도 등) • 인구변화대응 관련 조례 및 법·제도 개선사항 추진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s://org.seoul.go.kr/>)

5. 경상남도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 제도 기반

- 경상남도의 인구영향평가는 「경상남도 인구정책 조례³⁾」 제6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
 - 정책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 시행이 인구증가나 구조 변화 등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 효과나 장·단기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3) 경상남도 인구정책조례는 1조(목적)부터 20조(시행규칙)까지 있음

- 인구평가 지표 개발이나 실시 시기, 방법 등의 인구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음

〈표 3-17〉 경상남도 인구정책 조례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인구정책”이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
제3조 (도지사의 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개발·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도지사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제4조 (도민의 협조)	경상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도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제5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사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인구영향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사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파급효과, 장기·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지표 개발, 실시 시기 및 실시 방법 등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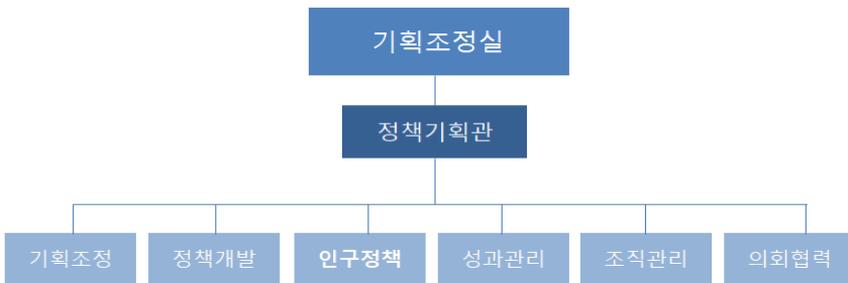
조항	내용
제7조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 인구 데이터 분석 및 대응사업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3. 인구교육사업 4.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사업 5.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6. 일·가정 양립 확산 및 인식개선사업 7. 청년·여성·신중년·고령자 일자리 발굴 및 지원사업 8. 고령자 건강증진 및 여가 문화 활동 촉진 사업 9.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정·고령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 10.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 감소 극복과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 추진체계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서 담당하던 인구영향평가는 2022년 8월 4일 개정된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년정책추진단이 당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 기존 체계에서는 정책기획관 내 인구정책담당은 업무총괄 1명, 주무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인구영향평가 등에 관한 업무도 인구정책담당이 수행
 - 여성가족아동국 여성정책과에서도 인구영향평가(성인지 관점 정책 사전 평가)를 운영하고 있었음

〈그림 3-8〉 민선 7기 경상남도 인구정책 추진체계



출처: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표 3-18〉 민선 7기 경상남도 인구정책 담당 업무 분장

부서	직위	담당업무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경상남도 저출생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인구정책(실무)위원회 운영 • 인구감소 극복 도 공모사업 추진 • 인구영향평가 추진 •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 • 인구정책 시책 발굴 및 관련 연구 추진

출처: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되면서, 인구정책 업무는 청년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되어,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에서 인구정책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16(청년정책추진단)에 따르면, 청년정책추진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며 행정부지사를 보좌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청년정책 신규시책 발굴 추진, 경상남도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 청년 역량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저출산 및 고령화 종합대책 수립 추진,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
- 청년정책추진단은 청년인구정책담당, 청년교류담당, 청년지원담당으로 업무구분되어, 인구정책 관련 업무는 청년인구정책담당이 맡고 있음
 - 인구영향평가는 청년인구정책담당 업무로 편제

〈표 3-19〉 민선 8기 경상남도 인구정책 담당 업무 분장

부서	직위	담당업무
청년정책추진단 청년인구정책담당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경상남도 저출생·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인구정책 실무위원회 운영 • 인구감소 극복 도 공모사업 • 인구영향평가 추진 •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업무 • 인구감소지역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지원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투자계획 수립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사업 추진관리(성과평가)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기금운용·관리 •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투자계획 검토·지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출처: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 한편 조직개편에 따라,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3조(균형발전국에 두는 과)를 개정하여, 균형발전과에서 기존 지역균형발전 업무와 함께 인구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을 함께 수행하고 있음
- 균형발전과는 균형발전담당, 지역혁신지원, 혁신도시담당, 지역개발담당으로 업무구분되어 있으며, 지방소멸기금 관련 업무는 지역혁신지원이 담당하고 있음

제 4 장

대구시 인구정책 여건 분석

제1절 대구시 인구현황 및 이동특성 분석

제2절 대구시 인구정책 현황

제4장 대구시 인구정책 여건 분석

제1절 대구시 인구현황 및 이동특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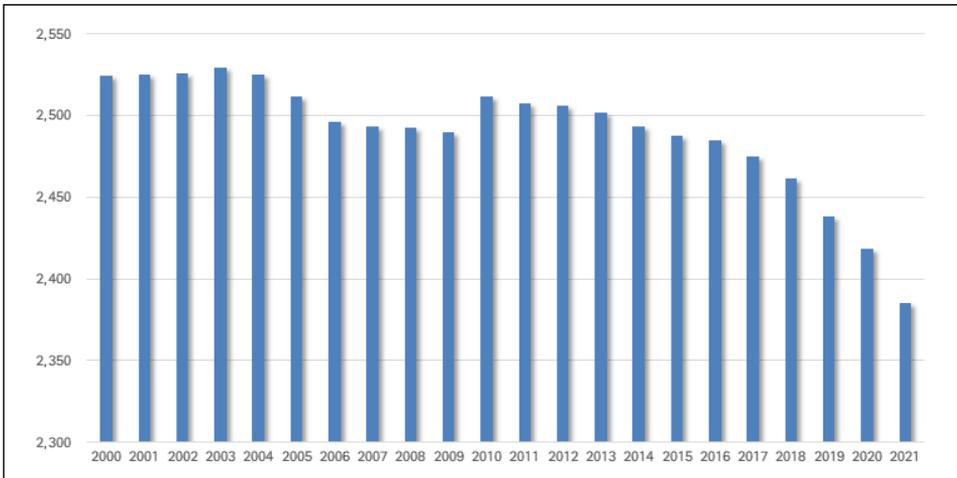
1. 대구시 인구현황 및 전망

1) 대구시 총인구 현황 및 전망

□ 총인구 및 인구증감률 현황 및 전망

- 2021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5,164만명 중에서 4.6%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인구는 현재 238만 5천명으로 2010년에 소폭 증가했던 시기도 있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2014년부터 250만 명 인구가 무너진 이후 2015년 248만 8천명으로 감소했고, 2021년부터는 240만 명 인구 규모 유지도 어려운 여건이 되었음

〈그림 4-1〉 대구시 연도별 인구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기준

〈표 4-1〉 대구시 인구 및 연평균 인구증감률 추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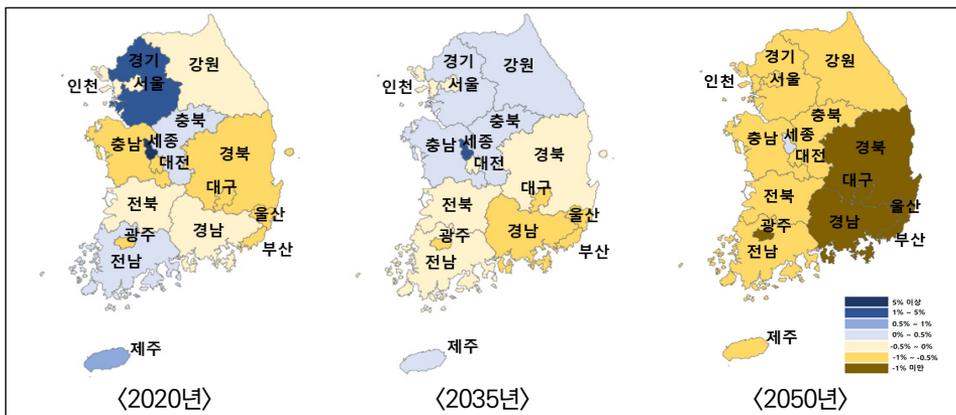
구분	인구수				인구비중 2021	연평균 인구증감률		
	2010	2015	2020	2021		'10-'15	'15-'20	'10-'21
전국	50,516	51,529	51,829	51,639	100.0	0.40	0.12	0.20
시부	23,235	23,325	22,827	22,581	43.7	0.08	-0.43	-0.26
도부	27,281	28,204	29,002	29,058	56.3	0.67	0.56	0.58
서울	10,313	10,022	9,668	9,509	18.4	-0.57	-0.72	-0.73
부산	3,568	3,514	3,392	3,350	6.5	-0.31	-0.70	-0.57
대구	2,512	2,488	2,418	2,385	4.6	-0.19	-0.56	-0.47
인천	2,758	2,926	2,943	2,948	5.7	1.19	0.12	0.61
광주	1,455	1,472	1,450	1,442	2.8	0.24	-0.30	-0.08
대전	1,504	1,519	1,464	1,452	2.8	0.20	-0.73	-0.32
울산	1,126	1,174	1,136	1,122	2.2	0.83	-0.65	-0.04
세종	-	211	356	372	0.7	-	11.03	9.92
경기	11,787	12,523	13,427	13,565	26.3	1.22	1.40	1.29
강원	1,530	1,550	1,543	1,538	3.0	0.26	-0.09	0.05
충북	1,550	1,584	1,601	1,597	3.1	0.44	0.21	0.28
충남	2,076	2,078	2,121	2,119	4.1	0.02	0.41	0.19
전북	1,869	1,870	1,804	1,787	3.5	0.01	-0.71	-0.41
전남	1,918	1,909	1,852	1,833	3.5	-0.10	-0.61	-0.41
경북	2,690	2,703	2,639	2,627	5.1	0.10	-0.47	-0.22
경남	3,291	3,365	3,340	3,314	6.4	0.45	-0.15	0.07
제주	571	624	675	677	1.3	1.79	1.56	1.55

주: 시부는 서울, 세종을 비롯하여 특광역시들, 도부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도를 포함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대구시 인구는 2010년 이후 초반(-0.19%)보다 최근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추세(-0.56%)로 2021년까지 연평균 0.47%씩 감소
 - 경기도가 도부에 포함되어 있어 2010년 이후 도부의 인구증가율은 양의 방향을 띄고, 시부의 인구증가율은 음의 방향을 띄고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 시부의 인구는 연평균 0.26%씩 감소한데 그쳤으나 대구시의 경우에는 그보다 약 2배의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전국적으로 시부에서 서울(-0.73%), 부산(-0.57%)에 이어 3번째(-0.47%)로 연평균 인구감소율이 큰 상황
- 통계청은 2021년 11월에 2070년까지의 국가 총인구를 추계한 이후 2022년 5월에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0~2050)」에서 시도별 총인구를 추계 하였음(통계청, 2022.5)
-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0년 현재 5,184만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 4,736만명에 이를 전망(통계청, 2021.12)
 - 2050년에 시도별 인구는 경기, 세종, 제주, 충남을 제외하고 모든 시도에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통계청, 2022.5)
- 서울, 부산, 울산, 대전, 광주 등 12개 시도가 대부분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할 것이지만 특히, 대구시의 경우 서울과 부산 다음으로 가장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지역으로 예측
- 인천(-14만명), 강원(-4만명), 충북(-3만명)은 5% 미만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 이나, 대구는 2020년 대비 2050년에 61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림 4-2〉 시도별 인구성장률 전망



자료: 통계청(2022.5),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0~2050)

〈표 4-2〉 시도별 총인구 및 구성비 전망: 2020~2050년

(단위: 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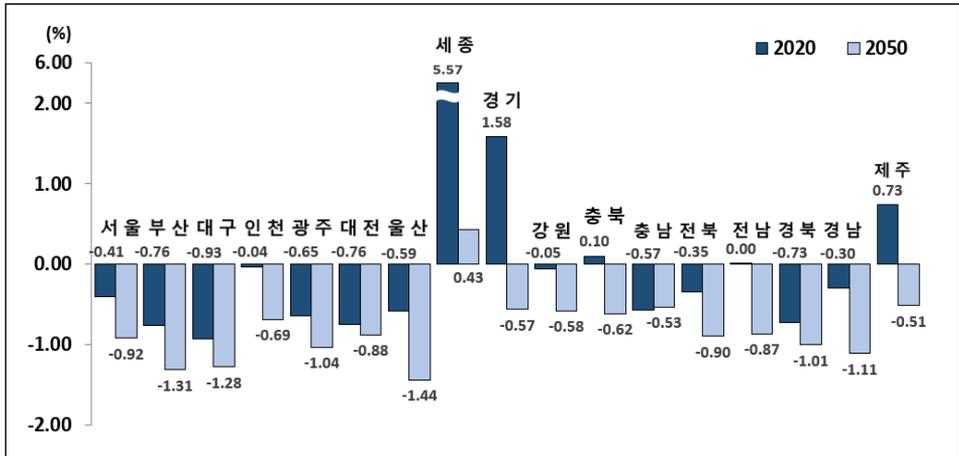
구분	총인구							증감률 (‘20년 대비 ‘50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증감	증감률
전국	5,184	5,145	5,120	5,087	5,019	4,903	4,736	-448	-8.6
서울	962	921	895	875	854	826	792	-170	-17.7
부산	336	321	308	296	283	267	251	-84	-25.1
대구	241	230	220	211	202	192	181	-61	-25.2
인천	295	296	296	297	295	290	281	-14	-4.7
광주	148	144	140	136	132	127	121	-27	-18.0
대전	149	144	140	137	134	130	125	-25	-16.4
울산	114	109	104	100	95	90	84	-29	-25.9
세종	35	43	50	55	58	61	63	28	81.1
경기	1,345	1,400	1,442	1,470	1,479	1,467	1,435	90	6.7
강원	152	152	153	154	154	152	148	-4	-2.5
충북	163	164	165	167	167	165	160	-3	-1.6
충남	218	220	223	225	225	224	219	1	0.7
전북	181	174	169	165	160	155	149	-31	-17.3
전남	179	174	170	166	163	158	152	-27	-15.1
경북	265	260	255	250	244	236	226	-40	-14.9
경남	334	325	319	312	302	291	277	-57	-17.1
제주	67	69	71	71	72	71	70	3	4.5
수도권	2,602	2,617	2,633	2,641	2,628	2,583	2,509	-94	-3.6
중부권	717	723	731	737	738	731	716	-1	-0.2
호남권	575	561	550	539	527	512	493	-82	-14.3
영남권	1,290	1,244	1,206	1,169	1,127	1,077	1,019	-271	-21.0

자료: 통계청(2022.5),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0~2050)

- 권역별로 2017년 영남권에서부터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하여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으로 대구가 포함되어 있는 영남권은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의 4개 권역 중에서 전년대비 인구성장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

- 특히, 대구는 2020년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전년대비 인구성장률이 가장 낮은 -0.93%로 2050년에는 -1.28%로 확대될 전망

〈그림 4-3〉 시도별 인구성장률 전망: 2020년과 2050년



주: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인구증감률을 말함

자료: 통계청(2022.5),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0~2050)

□ 연령대별 인구구조 현황 및 전망

- 주민등록인구를 연령대별로 14세 미만의 유소년인구와 15~64세 미만 생산연령인구,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대구의 인구구조는 2021년을 기준으로 유소년인구가 11.5%, 생산연령인구가 71.0%, 고령인구가 1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생산연령인구는 전국 평균수준이나 고령인구는 전국 대비 많고, 유소년인구는 적은 편임
 - 서울, 부산 등 타 특광역시에 속하는 시부(16.6%)에 비해서도 고령인구 비율은 높은 편
- 한편 2015년 대비 2021년에 유소년인구의 비율은 그나마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더 크지는 않은 편이나, 고령인구 비율은 4.8%가 증가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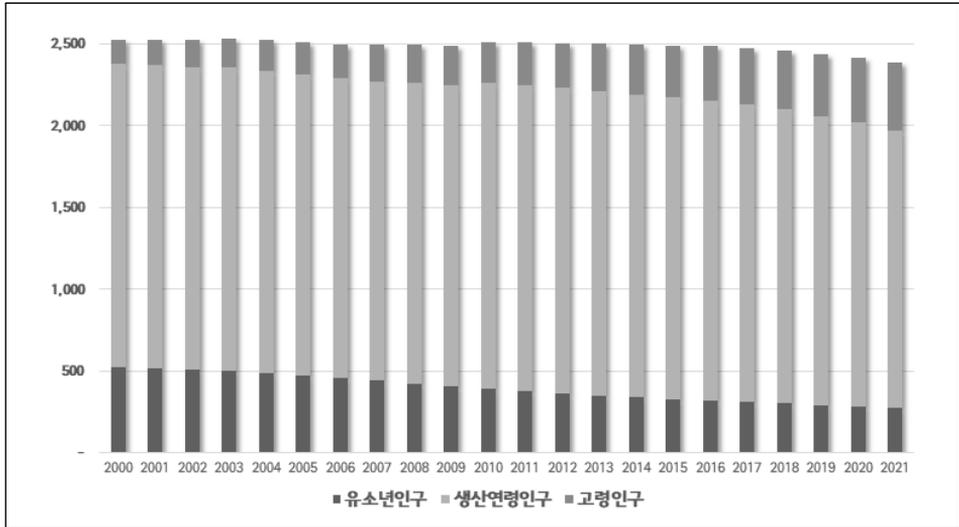
- 특히,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다소 더 크게 감소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전국적으로 생산연령인구는 2015년 대비 2021년에 2.1% 감소했으나 대구시의 경우에는 2015년에 74.1%에서 2021년에 71.0%로 3.1%가 감소하였고, 이는 시부의 -2.6%에 비해서도 높은 편

〈표 4-3〉 대구시 연령대별 인구구조 추이

구분	유소년인구 비율(%)			생산연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2015	2021	증감	2015	2021	증감	2015	2021	증감
전국	13.7	11.9	-1.8	73.1	71.0	-2.1	13.1	17.1	4.0
시부	13.0	11.2	-1.8	74.8	72.2	-2.6	12.3	16.6	4.4
도부	14.3	12.4	-1.9	71.8	70.1	-1.7	13.9	17.5	3.7
서울	12.0	10.0	-2.0	75.4	73.2	-2.2	12.6	16.8	4.2
부산	11.7	10.5	-1.1	73.7	69.1	-4.6	14.6	20.4	5.7
대구	13.2	11.5	-1.7	74.1	71.0	-3.1	12.7	17.5	4.8
인천	14.1	12.0	-2.0	75.2	73.2	-2.0	10.7	14.8	4.1
광주	15.4	13.1	-2.3	73.3	72.1	-1.2	11.3	14.8	3.5
대전	14.8	12.2	-2.6	74.3	72.6	-1.7	10.9	15.2	4.3
울산	14.9	13.3	-1.6	76.3	73.1	-3.2	8.8	13.6	4.8
세종	20.1	19.6	-0.5	69.3	70.3	1.0	10.6	10.1	-0.5
경기	15.2	13.1	-2.1	74.2	73.1	-1.2	10.5	13.9	3.3
강원	12.7	10.8	-1.9	70.4	67.5	-2.9	16.9	21.7	4.8
충북	13.8	11.9	-1.9	71.3	69.2	-2.2	14.8	18.9	4.1
충남	14.4	12.5	-1.8	69.2	67.7	-1.6	16.4	19.8	3.4
전북	13.5	11.4	-2.1	68.6	66.4	-2.3	17.8	22.3	4.4
전남	12.9	11.2	-1.7	66.6	64.5	-2.1	20.5	24.3	3.8
경북	12.6	11.0	-1.6	69.7	66.3	-3.4	17.7	22.7	5.0
경남	14.3	12.5	-1.8	71.9	69.1	-2.7	13.8	18.4	4.6
제주	15.7	13.9	-1.7	70.6	69.7	-0.9	13.8	16.3	2.6

주: 시부는 서울, 세종을 비롯하여 특광역시를, 도부는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도를 포함함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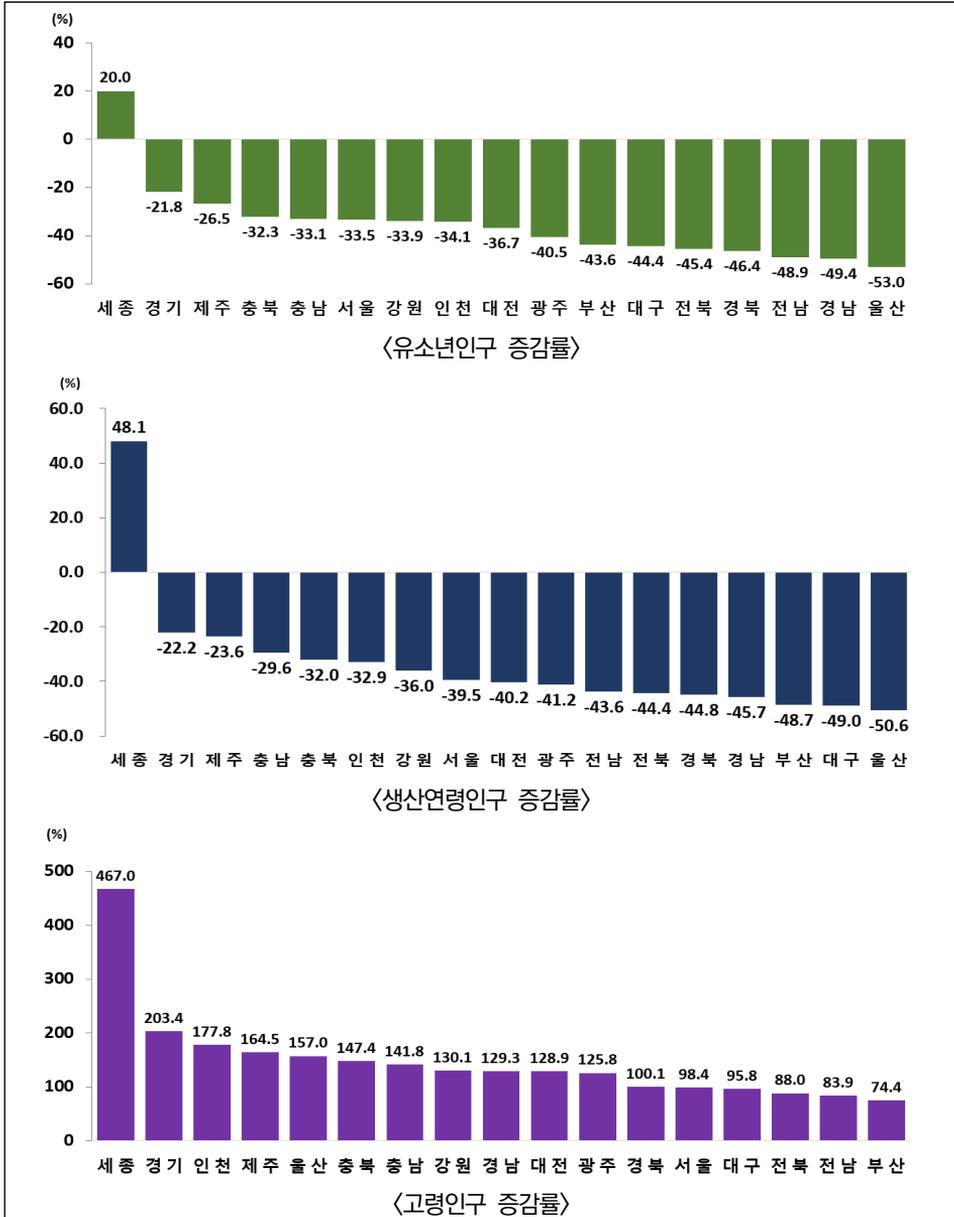
〈그림 4-4〉 대구시 연령대별 인구구조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기준

- 전국적으로 2020년 대비 2050년에 생산연령인구는 점차 감소하여 대구시의 경우 40% 이상 감소할 전망(통계청, 2022.5)
 - 유소년 인구나 학령인구는 반대로 울산,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대구시는 44.4% 감소가 예상됨
- 반면 2050년에는 전남, 경북, 강원 등 10개 시도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이며, 대구시의 경우에도 2020년 대비 2050년에 고령인구는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 생산연령인구 1백명이 부양하는 유소년 및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0년 전국 평균 38.7명(유소년 16.9명, 고령자 21.8명)에서, 2050년 95.8명(유소년 17.2명, 고령자 78.6명)으로 증가(통계청, 2022.5)할 것이며, 대구시의 경우 103명이 될 것으로 예상
 - 8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역시 상당히 상승하여 경북, 전남, 전북, 강원 등 8개 시도에서 1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구시의 경우에도 10.1%까지 증가 예상

〈그림 4-5〉 시도별 연령대별 인구증감률 전망: 2020년 대비 2050년



자료: 통계청(2022.5), 장래인구추계 시도편(2020~2050) 요약

□ 인구증감요인

- 총인구증감량은 증감요인별로 자연증감량과 사회증감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증감량은 (출생자수-사망자수)로 사회증감량은 (전입자수-전출자수)로 구분 가능
 - 대구시는 2019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초과하여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인구의 자연감소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이후 2021년까지 대구시의 총누적인구증감량은 107,091명이 감소하였음
 - 이 중에서 총누적자연증감량은 6,114명이나 총누적사회증감량은 -113,205명으로 자연적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순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량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4-4〉 대구시 인구감소 요인별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인구증감량	-6,583	-4,464	-9,619	-13,912	-24,192	-20,102	-28,219
	'15-'21년 총자연증감량(6,114명), 총사회증감량(-113,205명), 총인구증감량(-107,091명)						
자연증감량	6,357	4,796	2,317	330	-519	-3,267	-3,900
출생자수	19,438	18,298	15,946	14,400	13,233	11,193	10,700
사망자수	13,081	13,502	13,629	14,070	13,752	14,460	14,600
사회증감량	-12,940	-9,260	-11,936	-14,242	-23,673	-16,835	-24,319
전입자수	92,239	87,506	85,039	85,537	81,250	91,180	83,076
전출자수	105,179	96,766	96,975	99,779	104,923	108,015	107,395

주: 총인구증감량=자연증감량(출생자수-사망자수)+사회증감량(시도간 전입자수-시도간 전출자수)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 대구시의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⁴⁾은 0.81로 2000년 1.38에서 2016년 1.19로 다소 유지하다가 그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였음

4) 여성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 전국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에서 역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나 2020년 기준 0.84, 2021년 기준 0.81로 대구시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음

〈그림 4-6〉 대구시 출산율 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합계출산율

2) 대구시 구군별 인구현황 및 추이

□ 구군별 총인구 및 인구증감률 현황

- 대구시 구군별로는 연경지구 등 아파트 신규입주가 진행된 달성군을 제외하고는 최근 모든 자치구에서 인구가 감소
 - 서구의 경우 고령인구의 증가와 아파트 재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구가 이동하여 2015년부터 2020년 동안 가장 크게 인구가 감소하였음(대구광역시, 2022)
 - 2010년 이후 2021년까지 동구의 경우 2010년대 초반에 다소 인구가 증가하였고, 2010년대 후반에는 다소 감소율이 낮아 전체적으로 증감률이 인구 플러스 성장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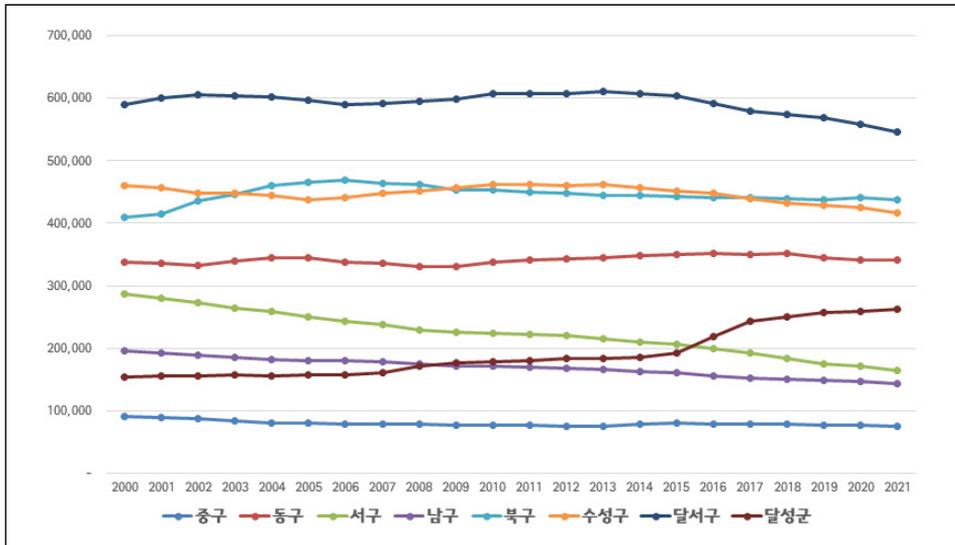
〈표 4-5〉 대구시 구군별 인구 및 연평균 인구증감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인구수				인구비중 2021	연평균 인구증감률		
	2010	2015	2020	2021		'10-'15	'15-'20	'10-'21
대구광역시	2,512	2,488	2,418	2,385	100.0	-0.19	-0.56	-0.47
중구	78	81	77	75	3.1	0.78	-1.11	-0.36
동구	338	350	342	341	14.3	0.71	-0.45	0.10
서구	225	206	171	165	6.9	-1.71	-3.69	-2.79
남구	171	161	147	143	6.0	-1.24	-1.83	-1.61
북구	453	443	440	437	18.3	-0.42	-0.13	-0.32
수성구	462	452	424	417	17.5	-0.45	-1.25	-0.92
달서구	607	603	559	545	22.8	-0.15	-1.51	-1.66
달성군	179	193	259	262	11.0	1.50	6.11	3.55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7〉 대구시 구군별 인구추이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시군구별 주민등록인구 기준

□ 구군별 연령대별 인구구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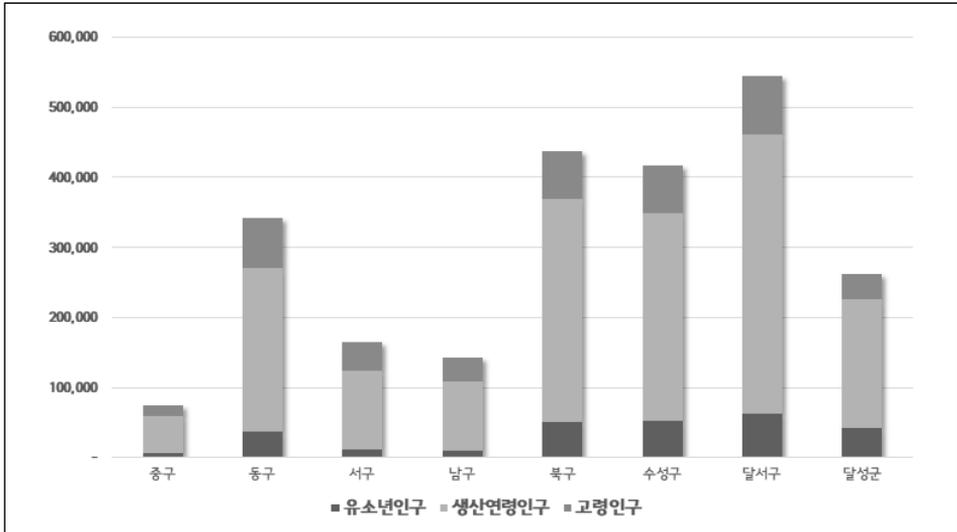
- 연령대별로 2021년 기준 유소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달성군으로 전체 인구의 1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서구로 6.9%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반면 고령인구 비율의 경우에는 2021년을 기준으로 서구와 남구가 각각 24.1%와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유소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달성군의 고령인구 비율은 13.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고령인구 비율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서구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2015년 대비 2021년에 무려 8.6%가 증가하였음
- 생산연령인구는 달서구가 2021년을 기준으로 73.0%로 가장 높은 반면 동구는 68.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2015년 대비 2021년에 서구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6.4%가 감소하였으며, 대구시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4-6〉 대구시 연령대별 인구구조 추이

구분	유소년인구 비율(%)			생산연령인구 비율(%)			고령인구 비율(%)		
	2015	2021	증감	2015	2021	증감	2015	2021	증감
대구광역시	13.2	11.5	-1.7	74.1	71.0	-3.1	12.7	17.5	4.8
중구	10.1	9.9	-0.2	71.1	69.1	-2.0	18.8	21.0	2.2
동구	12.7	10.9	-1.8	72.0	68.5	-3.5	15.3	20.6	5.3
서구	9.1	6.9	-2.2	75.4	69.0	-6.4	15.5	24.1	8.6
남구	9.2	7.2	-2.0	72.6	68.6	-4.0	18.2	24.2	5.9
북구	14.6	11.9	-2.8	74.3	72.8	-1.5	11.1	15.4	4.3
수성구	14.3	12.6	-1.7	73.6	70.8	-2.8	12.1	16.6	4.5
달서구	13.9	11.4	-2.5	76.1	73.0	-3.1	10.0	15.6	5.6
달성군	15.6	16.0	0.4	72.8	70.5	-2.4	11.5	13.5	2.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8〉 대구시 구군별 연령대별 인구구조(2021년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기준

2. 대구시 인구이동 및 특성

1) 대구시 총인구의 이동특성

□ 대구시 총인구의 순유출

- 대구시의 인구감소는 국가 전반적인 낮은 출산율의 요인도 있지만,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된 원인이 강함
 - 전반적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특광역시의 사회적 인구유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대구시의 경우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순유출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남

〈표 4-7〉 대구시 시도간 순유출 현황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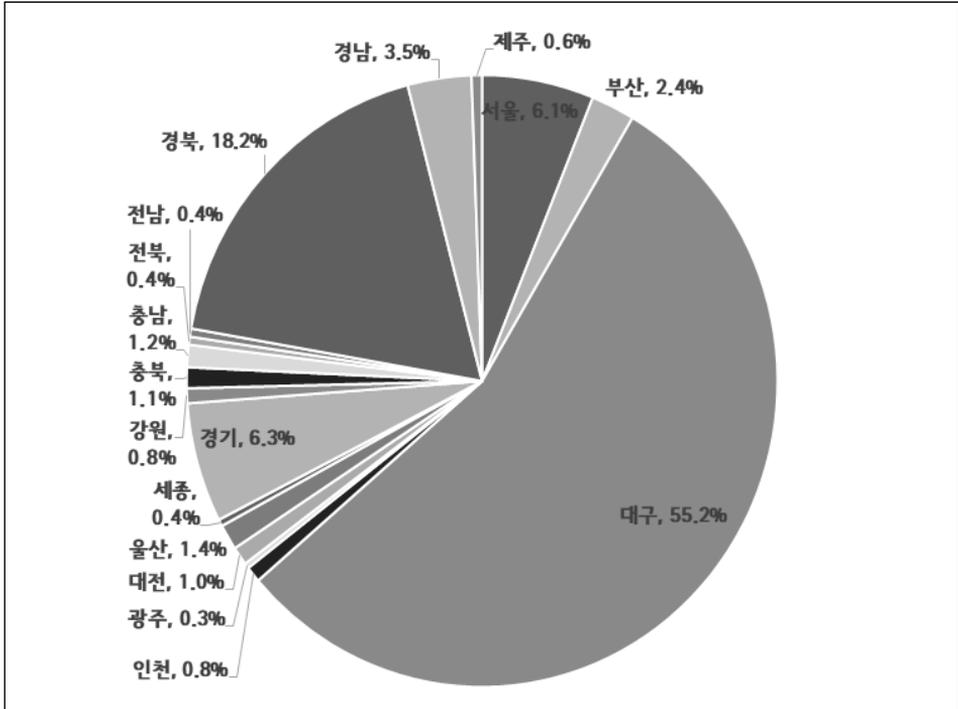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입	전출	증감	전입	전출	증감	전입	전출	증감
전국	2,385	2,385	-	2,534	2,534	-	2,447	2,447	-
서울	475.9	525.5	-49.6	510.0	574.9	-64.9	461.1	567.4	-106.2
부산	109.6	132.9	-23.4	121.5	135.9	-14.3	116.2	135.1	-18.9
대구	81.3	104.9	-23.7	91.2	108.0	-16.8	83.1	107.4	-24.3
인천	143.9	146.3	-2.3	146.9	162.7	-15.7	155.8	144.4	11.4
광주	67.8	71.7	-3.9	67.6	73.7	-6.1	64.7	70.6	-5.9
대전	78.4	94.8	-16.3	81.7	92.8	-11.1	80.0	89.0	-8.9
울산	40.1	50.2	-10.2	40.5	54.1	-13.6	39.4	53.1	-13.7
세종	54.0	30.3	23.7	48.9	35.9	13.0	46.9	32.8	14.1
경기	639.3	504.6	134.7	704.5	536.1	168.4	670.4	519.9	150.5
강원	77.9	76.3	1.7	82.3	76.8	5.5	83.5	76.8	6.7
충북	78.0	75.4	2.6	82.7	79.3	3.5	82.9	79.4	3.5
충남	114.8	115.6	-0.8	123.8	123.0	0.7	125.7	117.2	8.5
전북	58.4	71.2	-12.7	62.6	71.1	-8.5	61.5	67.3	-5.8
전남	88.1	96.9	-8.8	87.8	97.6	-9.8	85.0	89.5	-4.5
경북	120.8	125.4	-4.6	121.2	138.2	-17.0	130.5	127.1	3.3
경남	121.5	130.8	-9.3	124.0	140.7	-16.7	123.5	137.2	-13.7
제주	35.2	32.2	2.9	36.7	33.3	3.4	37.1	33.2	3.9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별 이동자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0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인구이동 전수부문을 살펴보아도 그 경향성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인구총조사(2020)를 기준으로 1년 전 대구시에 거주하였으나, 현재도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2020년에 106,502명으로 55.2%를 차지함
- 1년 전에는 대구시에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2020년 기준 경북이 1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경기 6.3%, 서울 6.1%, 경남 3.5% 순임

〈그림 4-9〉 대구시 구군별 인구이동(2021년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2020) 전수부문 인구이동 기준

□ 구군별 인구이동 특성

- 2021년 기준, 대구광역시 구군 중 인구가 가장 많이 순유출 되고 있는 지역은 달서구로(-12,647명)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수성구(-5,663명), 서구(-4,538명) 순으로 나타남
 - 달성군과 동구는 각각 2,560명과 1,142명이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순이동자수를 시도내 이동과 시도간 이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구의 모든 구군에서 타 시도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성구를 비롯하여 달서구에는 2021년 한 해 동안 약 6천명~7천명이 타 시도로 순유출되고 있음

- 대구시 내에서는 달서구의 인구가 타 대구시 지역으로의 유출이 많이 발생(-6,285명) 하였고, 서구에서도 타 대구시 지역으로의 유출이 다소 많이 발생(-2,552명) 하였으나 동구의 경우 순유입이 타 지역대비 많이 발생(4,655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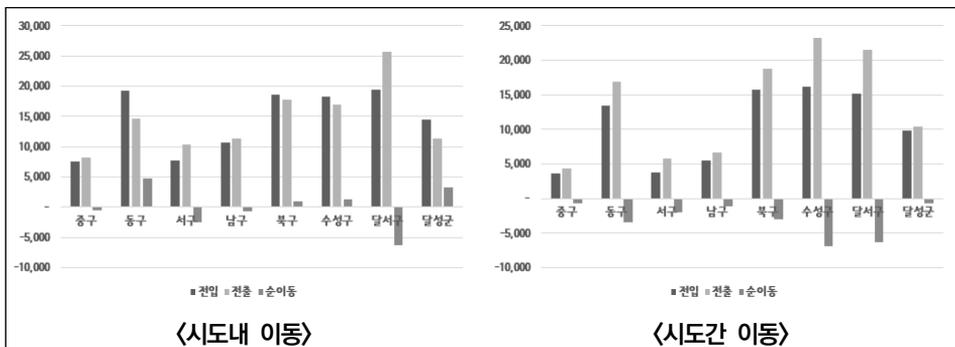
〈표 4-8〉 대구시 구군별 인구이동(2021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총이동자수			시도내 이동			시도간 이동		
	총전입	총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대구광역시	304,761	329,080	-24,319	115,986	115,986	-	83,076	107,395	-24,319
중구	13,694	14,956	-1,262	7,538	8,141	-603	3,683	4,342	-659
동구	49,235	48,093	1,142	19,220	14,565	4,655	13,392	16,905	-3,513
서구	17,417	21,955	-4,538	7,764	10,316	-2,552	3,745	5,731	-1,986
남구	21,898	23,756	-1,858	10,628	11,306	-678	5,465	6,645	-1,180
북구	57,793	59,846	-2,053	18,643	17,709	934	15,727	18,714	-2,987
수성구	54,490	60,153	-5,663	18,213	16,896	1,317	16,171	23,151	-6,980
달서구	56,756	69,403	-12,647	19,452	25,737	-6,285	15,138	21,500	-6,362
달성군	33,478	30,918	2,560	14,528	11,316	3,212	9,755	10,407	-652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시군구별 이동자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0〉 대구시 구군별 인구이동(2021년 기준)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기준

□ 유출인구의 이동지역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대구시 인구는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
 - 대구시의 인구는 서울(18,828명)과 경기(16,978명), 그리고 경북(16,710명)으로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음

〈그림 4-11〉 대구시 인구유출지역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기준

- 2021년을 기준으로만 본다면 대구시 인구는 경북으로 유출되는 비율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서울(23.8%), 경기(21.7%)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많았음
 - 울산이나 경남에서는 오히려 대구로 유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부산으로의 유출도 수도권이나 경북지역에 비해서는 적은 편

〈표 4-9〉 대구시 인구가 유출하는 지역현황

(단위: 명, %)

구분	2019-2021년 3년간						2021년	
	유입		유출		순이동		순이동	
	이동자수	비율	이동자수	비율	이동자수	비율	이동자수	비율
전국	964,428	100.0	1,029,255	100.0	-64,827	100.0	-24,319	100.0
서울	25,039	2.6	43,867	4.3	-18,828	29.0	-5,786	23.8
부산	13,614	1.4	15,677	1.5	-2,063	3.2	-338	1.4
대구	708,922	73.5	708,922	68.9	-	0.0	-	0.0
인천	4,518	0.5	6,216	0.6	-1,698	2.6	-615	2.5
광주	1,668	0.2	1,829	0.2	-161	0.2	-62	0.3
대전	4,583	0.5	6,660	0.6	-2,077	3.2	-737	3.0
울산	8,913	0.9	8,500	0.8	413	-0.6	86	-0.4
세종	1,436	0.1	2,538	0.2	-1,102	1.7	-377	1.6
경기	25,616	2.7	42,594	4.1	-16,978	26.2	-5,289	21.7
강원	4,415	0.5	5,525	0.5	-1,110	1.7	-381	1.6
충북	4,678	0.5	6,701	0.7	-2,023	3.1	-684	2.8
충남	5,387	0.6	7,782	0.8	-2,395	3.7	-808	3.3
전북	2,548	0.3	2,683	0.3	-135	0.2	-63	0.3
전남	2,743	0.3	3,040	0.3	-297	0.5	-138	0.6
경북	121,456	12.6	138,166	13.4	-16,710	25.8	-9,072	37.3
경남	25,677	2.7	24,369	2.4	1,308	-2.0	220	-0.9
제주	3,215	0.3	4,186	0.4	-971	1.5	-275	1.1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시도별 이동자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유출인구의 연령대별 특성

- 유출인구의 대다수는 대학생 또는 경제활동을 막 시작하는 20~29세로 2019~2021년 3년 동안 전체 유출인구의 36.2%를 차지하며, 2021년을 기준으로 37.1%의 비중을 차지함

- 20대 다음으로는 2019~2021년 3년간을 기준으로 50대의 유출비율이 17.0%로 높고, 30대 12.9%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반대로 10세 미만의 유소년인구의 경우에는 2019~2021년 3년 동안 336명이 순유입되었고, 2021년을 기준으로 282명이 유입되어 다소 더 많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10세 미만을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 순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대 중에서도 20대 후반의 순유출이 21.4%를 차지하여 경제 활동을 막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의 순유출이 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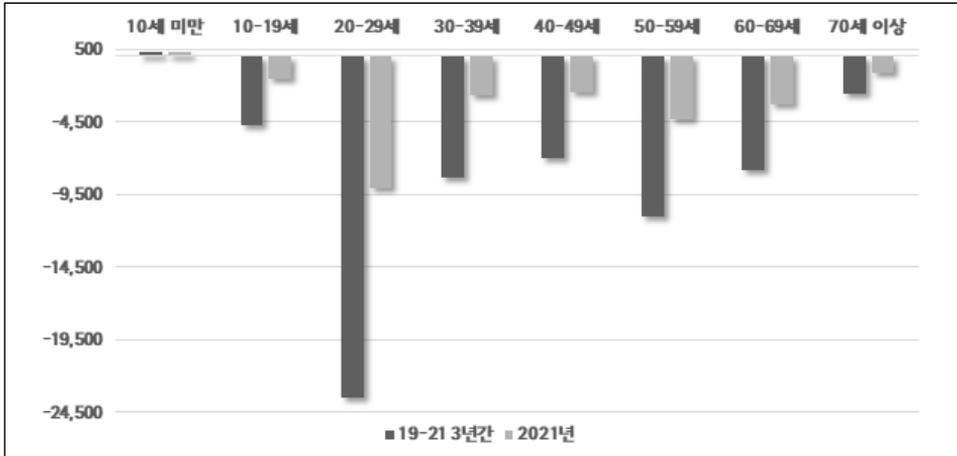
〈표 4-10〉 대구시 연령대별 인구이동

(단위: 명, %)

구분	2019~2021년 3년간				2021년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	순이동 비율	시도간 전입	시도간 전출	순이동	순이동 비율
합계	255,506	320,333	-64,827	100.0	83,076	107,395	-24,319	100.0
10세 미만	17,522	17,186	336	-0.5	5,312	5,030	282	-1.2
10~19세	15,850	20,636	-4,786	7.4	5,079	6,640	-1,561	6.4
20~29세	82,880	106,366	-23,486	36.2	27,981	37,005	-9,024	37.1
30~39세	50,907	59,270	-8,363	12.9	16,433	19,119	-2,686	11.0
40~49세	32,020	39,077	-7,057	10.9	10,220	12,691	-2,471	10.2
50~59세	25,962	36,976	-11,014	17.0	8,139	12,478	-4,339	17.8
60~69세	17,526	25,407	-7,881	12.2	5,788	9,134	-3,346	13.8
70세 이상	12,839	15,415	-2,576	4.0	4,124	5,298	-1,174	4.8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이동자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12〉 대구시 연령대별 인구유출 현황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인구이동통계 기준

□ 유출입인구의 경제활동상태

- 2020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대구시 경제활동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일하지 않은 인력이 보다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대구시에서 유출되는 인원의 63.0%는 경제활동인구이며, 유입인원의 61%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표 4-11〉 대구시 경제활동상태별 이동인구(2020년 기준)

구분	유출		유입		순이동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합계	489,731	100.0%	454,786	100.0%	-34,945	100.0%
일하였음(합계)	308,568	63.0%	277,219	61.0%	-31,349	89.7%
임금근로자	247,753	50.6%	223,890	49.2%	-23,863	68.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7,511	7.7%	33,354	7.3%	-4,157	11.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518	3.2%	14,527	3.2%	-991	2.8%
무급가족종사자	7,786	1.6%	5,448	1.2%	-2,338	6.7%
일하지 않았음	181,163	37.0%	177,567	39.0%	-3,596	10.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인구이동 20% 표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 유출입인구의 교육정도

- 2020년 인구총조사를 기준으로 대구시의 교육정도별 이동인구를 살펴보면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급인력이 많이 유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급인력은 2020년을 기준으로 279,526명이 유입 되었으나, 306,722명이 유출되어 27,196명이 순유출되었음
 - 특히, 4년제 이상 대학교를 졸업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으며, 이들의 순유출 비율은 54.4%에 달하고 있음

〈표 4-12〉 대구시 교육정도별 이동인구(2020년 기준)

구분	유출		유입		순이동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합계	530,049	100.0%	497,605	100.0%	-32,444	100.0%
초등학교	48,690	9.2%	48,057	9.7%	-633	2.0%
중학교	34,259	6.5%	34,166	6.9%	-93	0.3%
고등학교	129,739	24.5%	124,802	25.1%	-4,937	15.2%
대학교(4년제 미만)	94,639	17.9%	88,348	17.8%	-6,291	19.4%
대학교(4년제 이상)	181,167	34.2%	163,514	32.9%	-17,653	54.4%
대학원 이상	30,916	5.8%	27,664	5.6%	-3,252	10.0%
안다녔음	10,639	2.0%	11,054	2.2%	415	-1.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총조사 인구이동 20% 표본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2) 대구시 청년인구의 이동특성

□ 대구시 구군별 청년인구수와 비율

- 대구시의 20~30대 청년인구수는 2021년을 기준으로 총 59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4.9%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의 25.9% 대비 낮은편임
 - 대구시의 청년인구는 2015년에 전체인구의 26.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 2%가 감소한 수치임
- 구군별로는 중구의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청년인구 비율이 29.4%로 가장 높고, 2015년 대비 0.7%가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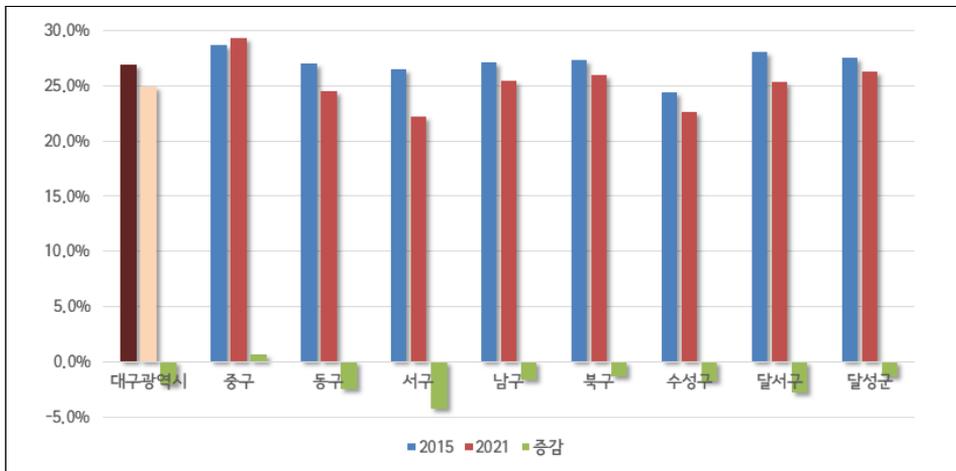
- 그러나 중구를 제외한 모든 구군에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서구의 경우 2015년 대비 2021년에 4.3%가 감소하였음

〈표 4-13〉 대구시 구군별 청년인구수 및 비율

구분	청년인구수(천명)			20-30대 인구비율(%)		
	2015	2021	증감	2015	2021	증감
전국	15,238	14,370	13,379	27.9	25.9	-2.0
대구광역시	736.8	669.4	593.8	26.9	24.9	-2.0
중구	23.2	23.2	22.0	28.6	29.4	0.7
동구	100.8	94.5	83.7	27.0	24.5	-2.5
서구	66.2	54.6	36.6	26.5	22.3	-4.3
남구	52.8	43.6	36.4	27.1	25.5	-1.6
북구	136.7	121.0	113.6	27.3	26.0	-1.3
수성구	121.2	110.1	94.6	24.4	22.7	-1.7
달서구	182.9	169.3	138.0	28.1	25.3	-2.8
달성군	53.1	53.1	68.9	27.5	26.2	-1.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를 바탕으로 저자작성

〈그림 4-13〉 대구시 구군별 청년인구 비율 및 증감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기준

□ 청년인구의 연령대별 인구규모 변화

- 특정년도 출생집단의 연령대별 인구규모를 비교해보면 대구시에서 태어나 2000년에 15~19세가 된 청년인구는 20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대구를 떠나기 시작하여 30대 초반에는 4명 중 1명이 대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은 20대 후반이 된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 첫 번째 직장을 구하게 되는데, 2005년 시점보다도 2010년 시점에 더 큰 폭으로 대구시 청년층의 인구규모가 감소하고 있어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

〈표 4-14〉 대구시 1981~1985년 출생자의 연도별 연령대별 인구규모 변화(15~19세=100)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전국	100.0	99.4	99.3	99.2	103.5
서울	100.0	103.0	113.9	105.9	96.0
부산	100.0	94.6	81.9	73.1	73.4
대구	100.0	96.5	84.6	77.9	81.3
인천	100.0	101.3	106.3	113.4	119.2
광주	100.0	97.8	91.0	88.3	91.2
대전	100.0	102.9	98.3	96.4	94.4
울산	100.0	96.5	95.6	104.1	107.6
세종	-	-	-	100.0	222.6
경기	100.0	115.8	133.5	147.2	168.4
강원	100.0	90.0	74.9	70.7	75.2
충북	100.0	94.5	87.5	86.7	91.1
충남	100.0	96.2	91.3	93.6	101.7
전북	100.0	86.1	69.7	64.7	66.5
전남	100.0	80.0	61.8	58.9	62.4
경북	100.0	90.8	80.4	77.4	79.5
경남	100.0	93.1	89.8	92.7	100.1
제주	100.0	96.7	85.9	93.3	116.2

주: 통계청(KOSIS), 주민등록연앙인구 기준

자료: 박진경·김도형(2020), 인구감소 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 대구시 구군별 청년인구 순유출 규모

- 대구시 청년인구는 구군별로 달서구와 서구, 수성구의 유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대 청년의 경우 수성구가, 30대 청년의 경우 서구의 유출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달성군의 경우 20~30대 연령층 모두에서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특히, 30대의 유입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구와 동구의 경우 모두 20대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동구의 경우에는 30대 청년인구의 유출규모가 커서 전체적으로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발생함

〈표 4-15〉 대구시 구군별 연령대별 인구 순이동량(2015-2019 5년간)

구분	합계	20대 미만	청년인구			40~64세	65세 이상
			소계	20대	30대		
대구광역시	-72,051	-2,481	-36,859	-31,143	-5,716	-28,180	-4,531
중구	-1,594	157	1,775	2,479	-704	-1,833	-1,693
동구	-4,376	-2,269	-1,235	498	-1,733	-460	-412
서구	-33,233	-4,848	-15,517	-6,662	-8,855	-9,973	-2,895
남구	-13,719	-1,785	-6,167	-882	-5,285	-3,992	-1,775
북구	-11,889	-2,905	-5,557	-4,636	-921	-4,061	634
수성구	-27,895	2,712	-15,360	-15,899	539	-13,011	-2,236
달서구	-44,017	-6,587	-22,784	-14,146	-8,638	-14,441	-205
달성군	64,672	13,044	27,986	8,105	19,881	19,591	4,051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박진경·김도형(2020)

□ 대구시 청년인구의 유출원인

- 통계청의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인구의 유출원인을 분석한 박진경·김도형(2020)에 따르면 대구시의 청년인구는 주로 직업(39.9%) 때문에 대구를 떠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주택(32.2%)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전입신고서 상에서 전입사유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의 7가지로 구분
- 대구시 20~30대 세대주를 기준으로 직업 때문에 대구시를 떠나는 청년들은 20대 후반이 51.9%로 가장 많았고, 20대 초반도 48.1%를 차지
 - 그 다음으로는 주택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0대 후반의 경우 24.0%, 20대 초반의 경우 16.8%로 많았고 대학을 진학하는 연령인 20대 초반의 경우 교육이 20.7%로 높은 비율을 보였음
- 대구시 30대 청년들의 경우에는 직업보다는 주택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특히 30대 후반의 경우 48.1%가 주택이라고 응답
 - 주택 다음으로는 직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30대 청년들의 경우 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0대 청년들에 비해서 많았음

〈표 4-16〉 대구시 20-30대 청년인구의 유출원인(2019년 기준, 세대주만)

(단위: %)

구분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
전국	35.0	12.2	36.7	5.2	5.2	0.5	5.3
대구광역시	39.9	11.6	32.2	5.8	4.6	0.5	5.3
20대 초반	48.1	4.8	16.8	20.7	4.7	0.3	4.5
20대 후반	51.9	10.8	24.0	3.4	4.9	0.4	4.7
30대 초반	33.6	16.8	37.5	1.3	4.6	0.6	5.6
30대 후반	25.4	12.4	48.1	2.9	4.3	0.7	6.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국내이동통계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 박진경·김도형(2020) 정리

제2절 대구시 인구정책 현황

1. 대구시 인구계획 및 평가 현황

1) 대구시 인구 관련 계획수립 현황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 2021년 12월 개정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르면,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교육·주택·교통·문화·복지 관련 지원 정책, ②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③ 그밖에 인구감소, 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일컫는다고 규정
 - 일반적인 인구정책의 세 부문, 즉 저출산, 고령화, 인구이동에 관한 정책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정책까지 포함하여 인구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3조에서는 시장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도록 책무 규정
 - 또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책무도 규정하여, 이에 따라 조례에 인구교육에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

〈표 4-17〉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비고
목적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제1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 기본계획에는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이 포함	제5조
인구정책 시행계획	•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해야 함	제6조
인구정책 사업의 시행	• 시장은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 ①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사업 ②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③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사업 ④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 ⑤ 전입 및 지역 정착 지원 사업 등	제7조
인구정책 조정위원회	•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등을 조정·심의 • 위원회는 위원장 1명(행정부시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제9조~ 제11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일: 2022년5월12일)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관련 계획

- 시장은 매5년 단위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5조), 2020년 6월에 인구정책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시행중
 - 계획내용에 대한 항목도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① 인구정책의 비전과 전략, ②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③ 인구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④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
- 종합계획의 비전은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대구’로 제시

〈그림 4-14〉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비전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대구!

정책
목표

▷ 인구감소 속도 완화 ▷ 인구구조 질 개선

추진 과제	전 략	정 책 과 제
	1. 인구유입 활성화	① 대구시민 만들기 ② 양질의 청년일자리 기반 확충 ③ 도시환경 경쟁력 강화
	2. 저출산 극복	① 결혼·출산 여건 조성 ② 전방위 돌봄체계 구축 ③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
	3. 고령화 연착륙	① 중장년 세대 지원 ② 시장형 노인일자리 지원 ③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
	4. 인구변화 대응	① 인구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② 도시공간 최적화 ③ 다운사이징 대응 및 행정 효율화

- 인구감소의 속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구조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책 목표를 삼음
 - 장래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가 도모 및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20~39세) 비중 유지
-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① 인구유입 활성화, ② 저출산 극복, ③ 고령화 연착륙, ④ 인구변화 대응 제시
 - 4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35개 실천과제 계획 수립

〈표 4-18〉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전략별 세부실천과제

구분	정책과제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인구 유입 활성화	① 대구시민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외 및 해외 유학생 유치 • U턴 청년 정착 지원 	교육협력정책관 청년정책과
	② 양질의 청년일자리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Star (대경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 • 대학 창업문화 활성화 •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 대구형 청년보장제 확대 	혁신성장정책과 창업진흥과 산단진흥과 농산유통과 청년정책과
	③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콘텐츠 개발 및 도시경관 개선 • 클린 교통·주거환경 조성 • 세대 맞춤형 주택 공급 	관광과 도시디자인과 미래형자동차과 건축주택과
저출산 극복	① 결혼·출산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 • 다자녀 가정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출산가정에 아낌없는 지원 	출산보육과
	② 3W-돌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 아이돌봄 119 지원 • 공보육 강화 	출산보육과 여성가족정책과 청소년과 출산보육과
	③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활성화 •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예산담당관 여성가족정책과 일자리노동정책과 출산보육과

구분	정책과제	세부실천과제	소관부서
고령화 연착륙	① 중장년세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년 취업 지원 • 50+ 세대 사회활동 지원 	일자리노동정책과 시민소통과
	② 시장형 노인일자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니어 창업지원 • 시니어 생산적,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어르신복지과
	③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사업 • 상황별 돌봄 서비스 제공 	어르신복지과 보건건강과
연구 변화 대응	① 인구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 IoT기반 스마트 홈 실증형 기술개발 • 휴먼 웰텍스 실용화 기업 지원사업 • 로봇산업 성장기반 강화 	혁신성장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섬유패션과 기계로봇과
	② 도시공간 최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쇠퇴지역 도시재생 • 자족형 콤팩트시티 조성 • 다핵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도시계획정책관
	③ 다운사이징 대응 및 행정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미래학교계획 수립 • 대구 생활권 인구통계 산정 • 대구경북 상생인구 협의체 운영 	교육청 데이터통계담당관 정책기획관

자료: 대구광역시(2020),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참조하여 작성

- 5년간 35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체 사업비 총 1조 1,281억 투입 계획
 - 재원별로는 국비 3,956억, 시비 4,172억, 구군비 518억, 기타 교육청 및 민자 등 2,634억 조달 계획 수립
- 종합계획 수립과 동시에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세부사업 추진중
 - 세부실천사업별로 매년 사업계획과 함께 성과지표도 함께 제시
 - 다만, 수립된 종합계획이 시 정책 전반에 해당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행계획에서는 중점추진과제를 선정
 - 2020년 7월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토론회 회의결과를 반영하여, 인구정책 각 과제 달성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규모가 크고 당해연도에 사업실적이 발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
 - 시행계획에서 당해년도 평가계획도 함께 수립

〈표 4-19〉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추진전략

구분	세부실천과제	사업비(백만원)				소관부서
		총계	국비	시비	기타	
인구 유입 활성화	• U턴 청년 정착지원 : 청년귀환 프로젝트	200	-	200	-	청년정책과
	• HuStar (대경 혁신인재 양성 프로젝트) 추진	17,400	-	11,100	6,300	혁신성장정책과
	• 세대 맞춤형 주택 공급	19,981	5,014	6,367	8,600	건축주택과
저출산 극복	• 출산가정에 아낌없는 지원	11,415	-	11,415	-	출산보육과
	• 아이돌봄 119 지원	14,883	10,419	2,232	2,232	여성가족정책과
	•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 청년고용, 고용환경 우수기업 지원	2,832	550	2,082	200	일자리노동정책과
고령화 연착륙	• 중장년 취업 지원 :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900	-	900	-	일자리노동정책과
	• 시니어 생산직,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	24,660	12,330	12,330	-	어르신복지과
	• 상황별 돌봄 서비스 제공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22,939	16,057	6,882	-	어르신복지과
연구 변화 대응	• 대구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신산업 육성	50,544	28,773	16,408	5,363	혁신성장정책과
	• 인구쇠퇴지역 도시재생 : 빈집활용 플랫폼 운영	750	-	450	300	도시정비과
	• 대구미래학교계획 수립 : 영역단위 학교공간 혁신사업	13,100	-	-	13,100	교육청 (교육시설과)

자료: 대구광역시(2020), 대구광역시 20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참조하여 작성

□ 2022년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 2022년 민선 자치단체장의 변화 등에 따라, 인구정책 분야도 새로운 시책 등이 추가되며 재편

- 기 수립된 종합계획의 전략체계는 유지하되, 전략 및 정책과제에 대응하여 2022년 생애주기별 주요 인구정책 사업이 확대되거나 새롭게 반영됨
- 정량적 지표활용 등에 한계가 있는 사업내용이 모호한 다핵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존사업은 폐지하며 디지털 청년 인재 사업 등 종료사업은 제척
- 청년월세 지원, 산모관리자 파견 등 9개 신규사업(국비2, 시비7) 추가

〈표 4-20〉 2022년 대구시 생애주기별 주요 인구정책(신규·확대)

구 분	사업명(예산)	사업내용	
청년	정착 지원	•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30억)	전입한 타지역 출신 대학생 최대 80만원 정착지원금 지원
	주거 안정	• 청년월세 지원(82억, 국비 매칭)	무주택 청년에 소득기준에 따라 월 임대료 최대 1년간 240만원 지원(20만원×12개월)
		• 청년전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30억)	임차보증금 연간이자 최대 100만원, 최대 4년간 지원(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주택)
		• 청년전세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6억)	전세 반환보증금 전액(임차보증금의 0.02%), 최대 4년간(임차보증금 3억이하 주택)
	미래 설계	• 청년 꿈꾸는대로 응원 펀딩(10억)	청년의 실험, 연구, 창직 등 혁신활동 지원(1팀당 최대 1천만원, 개인 최대500만원 지원)
귀환 지원	• 청년귀환 채널구축(4억)	출향청년 대상 귀환 플랫폼 운영(지역정보 및 일자리 정보 제공, 대구 탐방 프로그램)	
	• 대구 유입 청년 경력직 일자리 매칭(12억, 국비 매칭)	타지역 거주 경력직 청년과 지역 중소·중견기업매칭, 인건비(기업)와 이주지원금 등 지원(청년)	
결 혼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5.1억)	지역내 무주택 신혼부부대상,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금액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0.5~1.6% 대출이자지원	
	• 귀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억)	대구시 전입 예정 신혼부부에 대해 자녀수에 따라 1.0~1.6% 대출이자지원	
출 산	• 임신부 콜택시(맘스콜) 운영(6.5억)	임산부 콜택시 이용요금 70% 지원(월2만원 한도)	
	• 첫만남 이용권 지원(196억)	2022년 이후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지원	
	• 출산 축하금 지원(34억)	2022년 이후 출산가정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출산 축하금 지원	
	• 산모관리사 파견(12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10일 동안 1,110~2,183천원 지원	
영유아	• 영아수당(216억)	생후 24개월까지 월30만원씩 1인당 720만원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38억)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비 지원(1인당 월 7천원)	
	•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28억)	사립유치원 원아(25,316명) 급식비 무상지원	
청소년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25억)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학생(39,315명)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비 지원	
	• 다자녀가정 고등학생 지원(3억)	출생 3순위 이상 자녀 고등학교 입학지원금 50만원 지원	

2) 대구시 인구정책 평가현황

□ 2020년 시행계획상의 인구정책 평가체계

-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해야 하므로 인구정책 추진사업을 평가
 - 20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목표 대비 실적에 대한 정량·정성평가를 실시
 - 시행계획에서 계획된 인구정책 평가절차에 따르면 인구정책 추진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미래인구정책팀이 산출지표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한 후, 인구정책조정회의에서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달성도를 점검하도록 절차 마련
- 평가기준
 - 1차 세부사업 성과점검(산출지표 중심): 사업달성도, 추진사업 성격평가, 가감점
 - 2차 중장기과제 달성도 점검(결과지표 중심): 우수성, 효율성, 파급성
- 평가방법
 - 평가위원 평점에 의한 산술평균 산정
 - 평가등급별 비율 설정 후 대상사업 분배하는 상대평가 방식 채택

〈그림 4-15〉 인구정책 평가절차



자료: 대구광역시(2020), 대구광역시 20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참조하여 작성

○ 평가활용

- 산발적인 인구정책의 조정 및 체계적 모니터링, 효과성 검증
- 부서 및 추진사업의 평가, 정책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20년 인구정책 평가운용 결과

○ 평가대상

- 선택과 집중을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 상 정책과제별 12개 중점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2020년도 단년도 평가

○ 평가방법

- 인구정책조정회의 민간위원(11명)에 의한 전문가 평가단의 평가
- 2020년 12월 인구정책조정회의 개최시 정성평가 실시

〈표 4-21〉 성과지표 예시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

구분	측정지표		세부사항	비고
사업추진성과	• 참여자수		• 정량 • 목표치 대비 성과치	20점
인구전략성과	목표달성도	• 정규직 전환률	• 정량 • 1~3개월 인턴전환율	30점
		• 고용유지율	• 정량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수요자 만족도	• 참여기업 만족도	• 정량	20점
		• 참여자 만족도	• 정량	
조정회의평가	사업난이도 및 추진과정		• 정성	30점
	인구영향 효과성		• 정성	
	향후 기대가능성		• 정성	

자료: 대구광역시(2020),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조정회의 회의자료

○ 평가결과

- 2020년 중점추진과제 우수사업: Hustar(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
- 4대 전략별 과제 가운데에서는 인구유입 활성화 및 저출산 극복 관련 사업이 고령화 연착륙 및 인구변화 대응 과제에 비해 평가결과가 높게 나타남
- 인구영향적 성과측면에서 지역인구의 사회적·자연적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점수를 얻게 됨

○ 평가활용

- 인구증감효과가 부서사업의 단일 목표가 아님을 고려하여, 모범사업 발굴을 통한 BSC 시정기여도 부문 가점부여 및 예산편성시 대상사업에 대한 인구정책조정회의 의견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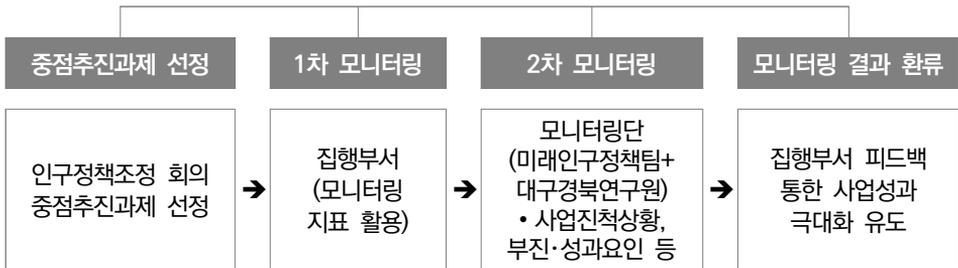
□ **현행 인구정책 평가제도의 한계 및 시사점**

- 중점추진과제가 사업규모가 크고 당해연도에 사업실적이 발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되어 장기추진사업이 중점추진과제로 선정되기 어려움
 - 성과지표가 사업별로 다른 정량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정량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 중점추진과제에서 배제됨
 -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도심융합특구, 행복기숙사 설립 등 장기추진사업은 평가 배제
- 차년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이후인 연말에 평가가 실시되어 실효적 예산 반영의 어려움 발생
- 상대평가 방식으로 결과가 발표되어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음에도 하위권으로 보고되는 실국장의 부담 존재
 - 실국장들이 당연직 위원인 인구정책 조정회의에서 해당 결과 공표
- 인구정책 분야 최우수사업을 발굴하는 상대적 성과평가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관련 사업분야에서 인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정책영향평가 전환 필요

□ 2022년 인구정책 평가계획

-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2년 인구정책의 평가의 경우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평가절차는 사업부서의 1차 모니터링 이후, 전문 모니터링단의 2차 모니터링으로 체계화하고 있음

〈그림 4-16〉 2022년 인구정책 평가계획



자료: 대구광역시(2022), 대구광역시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 평가대상의 중점추진과제는 2020년과 유사하나, 주요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 4대 분야 12개 중점추진과제로 선정 예정

〈표 4-22〉 2022년 대구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상의 중점추진과제안

추진전략	정책 과제	중점추진과제
인구유입 활성화	대구시민 만들기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양질의 청년 일자리 기반 확충	HuStar (대경혁신인재양성프로젝트)
	도시환경 경쟁력 강화	세대 맞춤형 주택 공급
저출산 극복	결혼·출산 여건 조성	대구형산모건강관리사 파견
	전방위 돌봄체계 구축	아이돌봄 119 지원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	고용친화기업 선정·지원
고령화 연착륙	중장년 세대 지원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 지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지원	시니어 생산적·사회공헌적 일자리 지원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보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인구변화 대응	인구변화 대응 신산업 육성	대구 규제자유특구 스마트 웰니스 산업 육성
	최적화된 도시공간 조성	빈집 활용 플랫폼 (빈집정보은행) 운영
	다운사이징 대응 교육 및 행정시스템 효율화	영역단위 학교공간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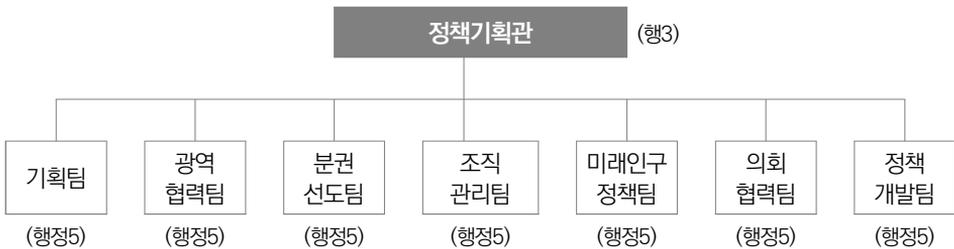
자료: 대구광역시(2022), 대구광역시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2. 대구시 인구정책 관련 조직 현황

□ 인구정책 담당조직

-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음
 - 정책기획관은 시정의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타시도 교류협력사업, 지방분권업무 및 지방이양, 조직 및 정원관리, 미래 시정발전과제 기획 및 인구정책, 대구광역시의회 의사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구정책은 미래인구정책팀에서 담당

〈그림 4-17〉 인구정책 담당조직



□ 인구정책 담당업무 분장

- 2022년 7월 현재, 미래인구정책팀의 정·현원 현황은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구성
 - 대구시의 미래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 뿐만 아니라 시정발전과제 기획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 인구정책 관련 업무 외에도 대구경북연구원 업무총괄,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

〈표 4-23〉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담당업무 분장

구분	담당업무	비고
미래인구정책팀장	• 업무전반	행정5급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 •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및 대형사업 발굴·추진 • 대구광역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운영 • 대구경북연구원 지도·감독 •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 운영 	행정6급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사업 발굴, 투자계획 수립 및 집행 등 • 구·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검토 및 지원 • 대학생 정착지원사업 지원 • 용역 심의위원회 운영 • 시, 출자·출연기관 용역 관리(평가, 공개 등) • 정책연구 용역비(풀 용역비) 운용 	시설6급
주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 • 인구유입 추진에 관한 사항(전입)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조정회의 운영 • 인구 통계 분석 • 대구경북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행정7급

자료: 대구광역시(2022)

제 5 장

대구시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제1절 기본방향 및 도입 전략

제2절 단계별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제5장 대구시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제1절 기본방향 및 도입 전략

1.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 인구정책 목적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 1980년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인구영향평가 및 2000년대 초반 환경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는 인구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사전적 영향평가제도의 형태를 취하였음
 - 2022년 현재, 수도권의 인구집중도 여전히 문제이지만, 저출산 및 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문제가 지역의 현안이 됨에 따라, 과거 산아제한정책 위주의 인구(조절)정책은 이제 인구구조 및 규모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재편되었기 때문에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목적도 변경됨
- 2021년 12월 시행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함(조례 제3조)
 -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인구구조와 규모의 개선은 2003년 이후 최근 18년간 감소하고 있는 대구의 인구 감소세를 늦추고,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인 인구 유출 대신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하는 정책 노력임
 - 특히 20~30대 인구 순유출 비율이 높아(21년 48%), 청년층의 혼인 및 출산 감소로 장기적인 인구감소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

- 즉 오늘날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주된 관심은 과거 인구집중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는 사전 규제적 성격의 영향평가제도이기 보다는 인구구조 및 규모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규범적인 영향평가제도에 가까움

□ 정책 순환 과정상 사전 및 사후 영향평가제도의 고려

- 앞서 정책 대안의 효과(policy impact)에 대한 분석·평가는 사전적으로 실시되는 영향분석(impact analysis)과 사후적으로 수행되는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넓은 의미의 정책 영향평가제도는 사전적 성격을 띠거나 환류를 주목적으로 한 사후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로 구분 가능
- 사전 영향분석과 사후 영향평가는 정책순환과정에서 상이하게 활용됨(한국 개발연구원, 2018)
 - 사전적으로 수행되는 영향분석은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에 대하여 일정한 가정에 근거하여 비용과 편익을 예상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이 비용 대비 편익을 근거로 최종적인 안을 확정하는데 기여
 - 사후적 영향평가는 기도입된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사후평가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단점을 개선하는 새로운 정책대안 설정에 기여
- 현재 대구는 인구정책 중점과제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평가 체계를 살펴보면, 이는 환류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후적 영향평가제도에 해당
 - 환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과평가제도가 인구영향평가제도로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예산이 배분되기 이전에 평가결과가 환류될 수 있어야 하는데, 평가시기와 예산기획 시기의 시차로 적절한 환류 체계가 마련되지 못하는 한계 발생
- 이에 사후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보완·개선 방안 및 사전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현실적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고려한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 인구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인구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인구정책의 범위의 설계가 중요한 이슈임
- 일반적으로 인구정책은 출생, 사망, 인구이동에 대한 조절 정책, 즉 인구 규모와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기 위해 인구변동요인에 영향을 가하는 공공정책으로, 각각 저출산 대책, 고령화 정책, 인구이동정책을 정책범위로 삼고 있음
 - 고령화 정책은 주로 복지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어 지고 있어, 인구정책은 대체로 출산력 증대와 인구이동과 관련된 정책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제2조)에서는 인구정책의 정의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되는 정책내용으로
 - 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교육·주택·교통·문화·복지 관련 지원 정책,
 - ②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③ 기타 인구감소·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음
 - 즉 고령화 정책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 교육, 주택, 교통, 문화, 복지 관련 지원정책까지 포함하고 있음
 -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정책이 인구 유입 및 정착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는 하지만,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인구정책의 범위는 좁은 의미의 인구정책, 즉 인구의 자연적 증가 및 사회적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저출산 대책과 인구이동정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대상범위를 폭넓게 잡는 경우, 현실적으로 많은 행정비용과 부서간 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해외의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경우 매우 폭넓고 다양한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목적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책 수립의 효과성 증진에 있기 보다는 정책 수립 이전에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및 의사결정자로 부터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설계의 참여에 목표가 있기 때문임

-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인구영향평가는 수행되고 있지 않으며, 고용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제도를 검토한 결과, 주요 재정지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평가하고 결과를 환류받는 체계로 운용되고 있음
 - 즉 성공적인 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을 위해 평가주체의 역량, 행정 부담, 분석결과의 효과적인 관리·집행 등 현실적인 행정 및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2. 제도 도입의 목표 및 추진전략

1) 제도 도입의 목적

- 대구시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목적은 인구정책의 효과성 증진, 즉 인구정책을 통한 인구유입 및 인구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분석하여 실질적 효과를 야기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데 있음
 -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은 기본적으로 구군의 역할이지만, 대구광역시외의 경우 인구정책의 영향이 일부 구군에 편중되지 않고 구군의 인구특성에 알맞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효과를 분석
- 또한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분석결과를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인구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 및 이해 제고
 -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3조는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해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2) 제도 도입 전략

□ 단계별 도입방안 마련

- 인구영향평가의 도입은 단계별로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임
 - 단기적으로는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추진과제 성과평가를 인구영향평가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도입방안 강구
 - 중장기적으로 조례/계획/사업 대상 인구영향평가 기본모형 도입
- (단기) 인구정책 중 중점추진과제를 선별하여 인구영향평가 시범 도입
 - 현재 12개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인구정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도입
 - 현재의 성과평가는 대구광역시 성과평가 담당부서로 일원화하며, 미래 인구정책팀은 인구영향평가제도 활용
- (중장기) 인구영향평가 기본모형 도입
 - 현재 대구광역시의 인구정책 기본조례에는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근거 조항이 부재함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영향평가 근거 명시
 - 조례 기반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사업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 실시
 - 사전적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 인구영향평가의 컨설팅 성격 강화
 - 인구시책 대상 인구영향평가 수행체계 확립
 - 인구영향평가 전담 조직 확대 또는 인구영향평가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

□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도입 방안 마련

- 한국의 인구영향평가제도는 경기도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도입된 바가 없음
 -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최초 도입이라는 타이틀에 무색하게, 경기도의 인구영향평가제도 또한 평가 전담인력의 부재, 심층평가를 담당할 전문가들의 한계, 환류체계 미흡이라는 고질적 문제에 봉착

- 이러한 문제 및 인구영향평가의 계측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앙부처 단위에서도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기보다는 관련 계획의 집행률 등을 모니터링하고 계획상의 사업을 성과평가 하는 수준에서 평가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 대구광역시의 현재의 인구시책 성과평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이 실제 인구구조 및 규모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시범 적용해 보아야 함
 - 광범위한 정책을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대상으로 밀도있게 분석하여 관련 정책입안자에게 결과에 대한 환류조치를 명확히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제2절 단계별 인구영향평가 설계

1.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 도입 여건

-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은 대구광역시의 현재 제도적 기반과 관련 계획, 추진인력 등을 고려하여 제안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는 인구영향평가제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장의 책무 규정(제3조)으로서 정책 발굴 및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음
 - 현재 수립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5개년 계획으로 수립(2020~2024)되어 있으며, 매년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시행중
 - 인구정책 종합계획상의 목표는 인구감소의 속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구조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장래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가 도모 및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20~39세) 비중 유지로 설정됨
 -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① 인구유입 활성화, ② 저출산 극복, ③ 고령화 연착륙, ④ 인구변화 대응 제시의 4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35개 실천과제 수립
-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정책대상은 현재 수립된 종합계획상의 인구정책이 1차적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가운데에서 장래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가라는 직접적 인구정책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다면, 인구유입 활성화 정책과 저출산 극복 정책이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정책대상이 될 수 있음
- 한편, 현재 미래인구정책팀의 조직 및 인력구조를 살펴보면, 인구정책팀의 정·현원 현황은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팀이 인구정책 뿐만 아니라 시정발전과제 기획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조직 역량이 부족함

- 따라서 현재의 제도적 기반이 유지된 상황의 단기적 도입방안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인구정책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담당부서로 이관하고, 인구정책 평가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제도 도입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인구정책담당관의 정·현원 현황은 담당관 1명, 팀장 3명, 주무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에서 인구정책, 인구통계, 인구사업을 담당하고 있음

〈표 5-1〉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여건

구분	상세내용	비고
관련 제도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3조 • 시장은 인구구조와 규모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 	인구영향평가 규정 없음
관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0~2024) 기수립 • 2022년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시행계획 기수립 • ① 인구유입 활성화, ② 저출산 극복, ③ 고령화 연착륙, ④ 인구 변화 대응 제시의 4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35개 실천과제 중 직접적 인구정책에 해당되는 인구유입 활성화 및 저출산 극복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제도 고려 가능 	기본계획상의 인구정책은 간접계획을 포함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인구정책팀(팀장 1명, 주무관 3명)은 인구정책 외 시정발전 업무 함께 수행 •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현재 주무관 1인이 수행하고 있는 인구정책 업무를 팀 단위에서 수행 중 	현재 업무만으로도 업무 과중

□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 평가주관은 미래인구정책팀이며, 기존 성과평가체계와 달리 인구정책조정 위원회는 조례상의 기능에 맞게 주요 평가방식 등에 대한 심의만 수행
 - 기존 평가체계에서는 인구정책조정위원회가 정성평가를 수행하여 심의 기관이 실제 평가도 수행하는 역할을 함
- 평가절차는 중점 인구영향평가 대상의 확정, 담당 사업부서의 1차 체크리스트 작성, 관련 전문가의 심층평가 실시, 심층평가결과의 개선 및 권고사항 담당 부서 송부, 개선대책 수립 등 반영계획 제출, 종합결과에 따른 계획 및 예산 환류 조치 등의 절차를 거침
- 평가대상은 청년인구 유지라는 현재의 대구시 인구목표 달성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정책을 선정하되, 민선 자치단체장의 변화 등의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시가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사업 중에서 선정

〈표 5-2〉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구분	상세내용	비고
평가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팀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
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인구영향평가 대상의 확정 • 담당 사업부서의 체크리스트 작성 • 관련 전문가의 심층평가 실시 • 심층평가결과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 사업부서 송부 • 개선대책 수립 등 반영계획 제출 	핵심시책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
평가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상 단년도 사업기간 해당년도에 맞추어 평가 실시 • 현재 평가시기와 동일하거나 예산반영을 위해 조기에 실시 가능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인구 유지라는 현재의 대구시 인구목표 달성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정책을 선정 • 민선자치단체장의 변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022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사업 중에서 선정 가능 	
평가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결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환류 조치 	

- 평가대상이 계획상의 추진사업이므로, 평가시기는 예산상 단년도 사업기간에 맞추어 평가 실시
 - 평가결과의 차년도 예산반영을 위하여 예년에 비해 조기에 실시하는 것도 고려 가능
- 인구영향평가제도의 특징은 평가결과의 개선의견 및 권고사항을 해당 정책 입안자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환류하는 것이므로, 사업부서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개선 조치 사항을 사업에 환류하도록 조치

□ 단기적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지표설계

-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상의 시장의 책무(제3조)를 살펴보면, 시장은 인구구조와 규모의 개선 및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정책 발굴 및 제도 마련 등의 노력을 해야 함을 알 수 있음
 - 대구시 인구정책의 목표는 첫째, 인구구조의 개선, 둘째, 인구규모의 개선, 셋째, 지역별 인구특성의 고려가 인구정책의 목표 영역이 되는 것임
-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에서 고려해야 하는 영역 지표 또한 인구구조, 인구 규모, 지역별 특성으로 세분화 가능
-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시범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며, 시범도입을 고려하여 자체진단 및 심층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이 설계 가능함
 - 인구측면에서 인구구조, 인구증감 영향 정도와 지역측면에서 각각의 영향이 지역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

〈표 5-3〉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지표설계

구분	지표예시	상세내용
인구측면	• 인구구조	• 사업이 연령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 사업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 인구증감	• 사업이 인구의 자연적 증감을 이끄는 정도 • 사업이 인구의 사회적 증감을 이끄는 정도
지역측면	• 특정지역의 인구영향	• 사업이 특정지역의 인구구조 및 증감에 미치는 영향

- 각 항목별로 1차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자체진단을 실시하며, 2차적으로 관련 전문가가 심층평가를 실시
- 구체적인 평가절차는 〈그림 5-1〉과 같음
 - 인구정책 총괄팀이 시범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안, 심층평가 연구용역을 위탁연구로 수행하는 안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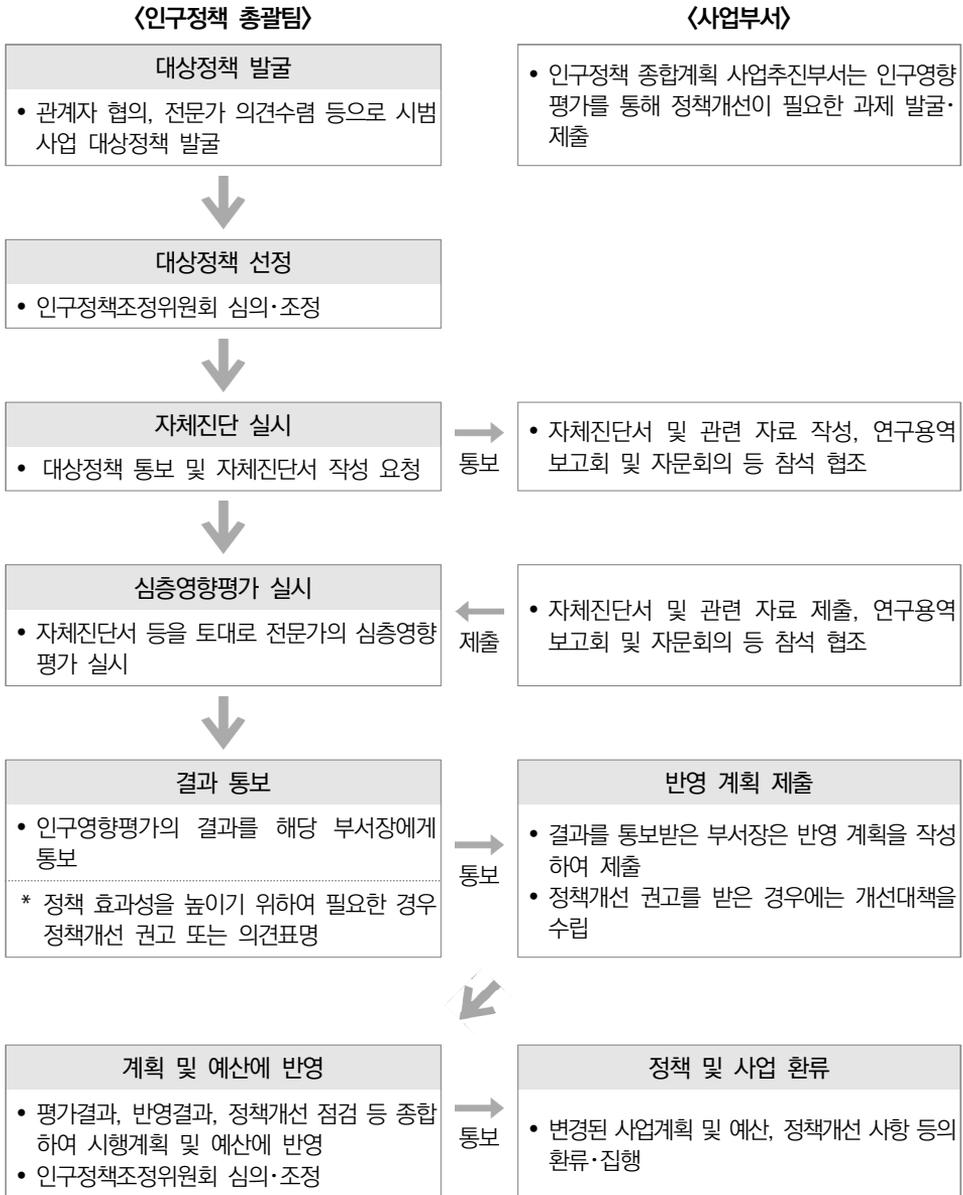
〈정책사례: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심층평가 -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 사업〉

- 시범사업 수탁기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연구방법: 심층면접조사
- 심층평가절차: 관련 자료 분석 → 관계자 간담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 개선안 마련 및 정책 환류를 위한 실무관계자 회의 → 정책 제안을 위한 포럼 개최 → 개선방안 도출
- 시사점: 수탁연구용역으로 실시되어 밀도있는 분석 및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으며, 관련 포럼 개최 등으로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졌으나, 연구결과의 환류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아, 결과 반영 미흡

□ 대상사업안의 자체진단서 및 심층평가서 예시

- 해당되는 정책대상을 고려하여 자체진단서 및 심층평가서를 제안하면 〈표 5-4〉와 〈표 5-5〉와 같이 설계 가능

〈그림 5-1〉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 평가절차



〈표 5-4〉 대구 인구영향평가 자체진단서 예시

자체 진단서			
종합계획 전략 영역	인구정책 종합계획 4대 중점추진전략 중 해당되는 사업에 체크 (해당사항에 ☑)		
	인구유입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저출산 극복 <input type="checkbox"/>	고령화 연착륙 <input type="checkbox"/> 인구변화 대응 <input type="checkbox"/>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부서(담당자)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 사업대상 및 기간 • 지원내용 • 소요예산 	
인구 영향 평가	인구 구조	1) 사업이 연령별 인구구조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 중복 체크 가능 ※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 아동복지법에서는 만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고 청소년 기본법 상의 청소년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연령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 학령인구로 구분하도록 함	
		영유아(0~4세) <input type="checkbox"/>	어린이(5~12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청소년(13~19세) <input type="checkbox"/>
		청년(20~39세) <input type="checkbox"/>	중장년(40~64세) <input type="checkbox"/> 노인(65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 (사업이 성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내용 서술)	
		※ 가령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 “청년”중 실제 정책대상이 되는 청년의 연령대 구체적 서술. (예: 대학생 지원 등)	
		2) 사업이 일-가정 양립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 근로시간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사업을 포함하며, 가사노동 경감에 영향을 주는 사업은 근로자를 위한 가사도우미사업이나 보육사업을 포함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을 포함			
근로시간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여가활용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가사노동 경감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 (사업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서술)			
※ 가령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사업은 가사노동 경감에 영향을 끼치는 사업으로			

	인구 증감	3) 사업이 인구의 자연적 증감을 이끌 수 있는가? (해당사항에 ☑)		
		혼인증감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출산증감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 (사업이 인구의 자연적 증감에 미치는 작·간접적 영향 서술) ※ 가령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혼인 증감 및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유지에 기여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대구시로부터 지역 유출을 억제했다는 측면에서 인구이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음		
		4) 사업이 인구의 사회적 증감을 이끌 수 있는가? (해당사항에 ☑)		
		※ 해당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 인구이동(전입·전출)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인구의 지역정착에 영향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 (사업이 인구의 사회적 증감에 미치는 작·간접적 영향 서술) ※ 가령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의 경우, 전입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으므로 인구 유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업임. 인구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은 청년의 지역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지역 영향 평가	특정 지역의 인구 구조	3) 사업이 특정 지역의 인구구조 및 증감에 영향을 주는가? (해당사항에 ☑)		
		중구 <input type="checkbox"/>	동구 <input type="checkbox"/>	서구 <input type="checkbox"/>
		남구 <input type="checkbox"/>	북구 <input type="checkbox"/>	수성구 <input type="checkbox"/>
		달서구 <input type="checkbox"/>	달성군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 (사업이 특정 지역의 인구구조에 미치는 내용 서술) ※ 가령 전입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사업의 경우, 관내 대학교 소재지역이 1차적 영향, 신청 대학생의 분포 지역이 2차적 영향일 것이며, 전입신고 지역과 대학 소재지역이 상이한 경우 등은 두 지역 모두 영향지역이 된다고 분석 가능				
사업 평가	총 평			
	인구영향에 긍정적인 측면			
	인구영향에 부정적인 측면			
실행전략	애로사항, 문제점, 한계			
	개선방안			

〈표 5-5〉 전문가 심층평가서 예시

전문가 심층평가서				
종합계획 전략 영역	인구정책 종합계획 4대 중점추진전략 중 해당되는 사업에 체크 (해당사항에 ☑)			
	인구유입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저출산 극복 <input type="checkbox"/>	고령화 연착륙 <input type="checkbox"/>	인구변화 대응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I. 정책의 인구 특성 분석				
1. 사업이 연령별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항목	(인구영향) 점검 포인트			
연령별 인구구조	◇ 점검 포인트 작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점검 포인트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개선 방안 등 작성			
2. 사업이 일-가정 양립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항목	(인구영향) 점검 포인트			
일-가정 양립	◇ 점검 포인트 작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점검 포인트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개선 방안 등 작성			
3. 사업이 인구의 자연적 증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항목	(인구영향) 점검 포인트			
인구의 자연적 증감	◇ 점검 포인트 작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점검 포인트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개선 방안 등 작성			
4. 사업이 인구의 사회적 증감에 미치는 영향				
분석평가 항목	(인구영향) 점검 포인트			
인구의 사회적 증감	◇ 점검 포인트 작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점검 포인트에 대한 분석 의견 및 개선 방안 등 작성			

2.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 설계

□ 도입 여건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은 대구광역시의 현재 제도적 기반과 관련 계획, 추진인력 등의 개편을 전제하여 제안되는 것임
- 현재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구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제도적 기반하에서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정책대상은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수립되고 있는 종합계획상의 인구정책이 될 것이며, 1차 5개년 계획 당시에는 도입되지 않았던 사전적 인구영향평가 검토를 통하여, 2차 5개년 계획 수립부터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음
- 현재 대구시 인구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미래인구정책팀의 조직 및 인력구조로는 인구영향평가의 기본모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 또는 인구정책 조직 확충방안을 전제로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설계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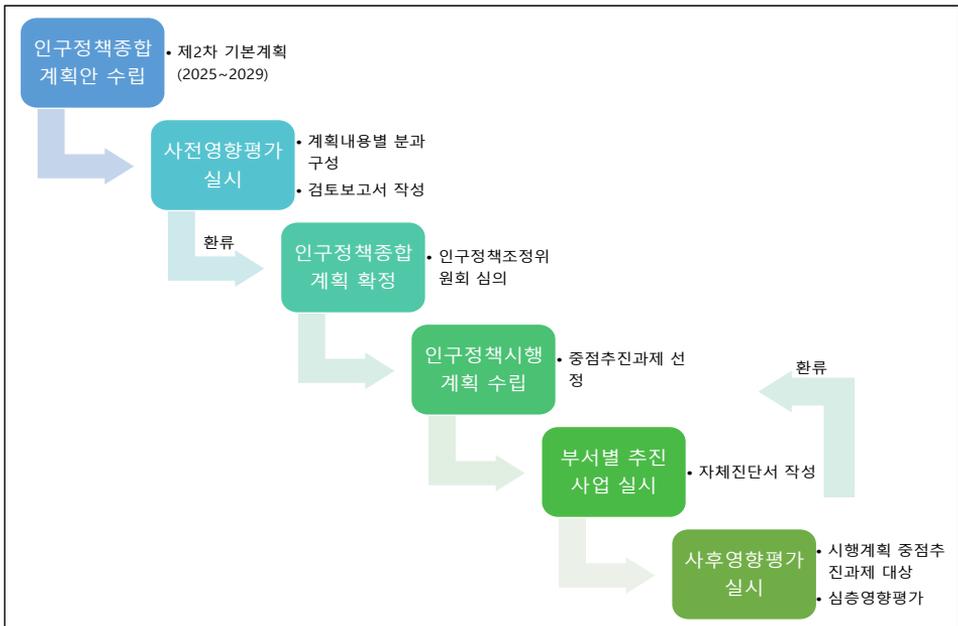
〈표 5-6〉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여건

구분	상세내용	비고
관련 제도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상 인구영향평가 규정 추가 • (조례 개정안) 현재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이 규정되어 있는 제7조를 개정하여, 2항 규정 신설 • (조례 신설안)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 2항 신설
관련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 수립시 적용 • 계획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적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2차 종합계획 수립시 적용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정책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 •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전담할 주무관 1인 확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주무관 1인이 인구영향평가 업무 전담 수행 중) • 인구영향평가센터 설립 검토 	미래업무 이관, 인구정책 조직으로 확대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 평가주관은 확대·개편되는 인구정책팀 또는 신설되는 인구영향평가센터가 수행
- 제2차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2025~2029) 수립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실제적 도입방안 마련
 - 우리나라의 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이후, 사전적 영향평가의 인식이 강하므로,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사전적 제도 도입으로 설계
 - 사후영향평가제도는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 시범사업 적용의 정책대상 확대개편으로 실시
- 따라서 평가절차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안을 대상으로 사전영향평가의 실시,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의 수립,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의 중점추진과제를 대상으로 한 사후영향평가제도 실시 등으로 구성

〈그림 5-2〉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 절차



- 종합계획안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영향평가는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유관기관 등의 사전 체크리스트 검토 등을 통한 종합의견 수렴 절차를 수행
 -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되도록 종합계획 내용에 따른 분과 구성으로 사전영향평가의 실효 제고
- 현재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에 의하면,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이라는 계획 내용만을 담고 있어서, 구체적인 분과 구성은 향후 계획내용 수립방향에 따라 구성
- 단, 1차 종합계획의 전략내용을 고려하건데, 사전영향평가 검토 분과는 인구유입 분과, 저출산 대책 분과, 고령화 대책 분과, 정주여건개선 분과 등으로 구성 가능
- 평가시기는 사전영향평가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이전인 2024년도가 될 것이며, 사후영향평가는 제2차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매년도 시행계획 수립시기가 될 것임
- 사후영향평가는 예산상 단년도 사업기간 완료시점에 맞추어 평가가 실시 될 것이므로 2025년 시행계획 사업완료 시점임
- 평가대상은 사전영향평가는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안이 될 것이며, 사후영향평가는 매년도 시행계획상 중점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환류는 사전영향평가 결과는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되며, 사후영향평가 결과는 매년도 시행계획상 사업내용에 반영

〈표 5-7〉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설계

구분	상세내용	비고
평가주관	• 인구정책팀 또는 인구영향평가센터	인구정책조정위원회 심의
평가절차	• 종합계획 수립전 사전 인구영향평가 실시 • 계획안 대상 시민, 관련 전문가, 공무원, 유관기관 등의 체크리스트 항목 검토 및 집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관련 분과 구성을 통한 종합보고서 작성 및 정책 수립 •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매년도 사후 영향평가제도 실시	종합계획 수립안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제도 실시
평가시기	• 사전영향평가는 5개년 종합계획(2025~2029) 수립 이전인 2024 년도에 실시 • 사후영향평가는 예산상 단년도 사업기간 완료시점에 맞추어 평가 실시	
평가대상	• 사전영향평가는 5개년 종합계획안을 대상으로 실시 • 사후영향평가는 시행계획상 중점정책과제를 대상으로 실시	사전영향평가는 종합계획 대상 사후영향평가는 시행계획 대상
평가환류	• 사전영향평가 결과는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 • 사후영향평가 결과는 매년도 시행계획상 사업내용에 반영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사전영향평가 지표설계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 제도의 사전영향평가 지표는 제2차 인구정책 기본 계획의 내용이 수립되어야 명확하게 설계 가능하나,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면 〈표 5-8〉과 같음
- 사전영향평가 검토 분과는 인구유입 분과, 저출산 대책 분과, 고령화 대책 분과, 정주여건개선 분과 등으로 구성 가능
- 각 분과별로 계획안을 검토하되, 공통항목에 대해서는 각 분과가 모두 검토
 - 미래의 인구유입 및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출산율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미래세대에 재정부담을 일으키는 정도, 세대별 정책 마련 정도 등을 파악하여 분과별 검토의견서 작성

〈표 5-8〉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사전영향평가 관련 체크리스트 예시

구분	체크리스트
인구유입	• 해당 계획이 미래의 인구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청년의 인구 유입과 유출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인구의 향후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칩니까? (연령대에 따른 비율)
	• 해당 계획이 인구의 지역분포에 영향을 미칩니까? (도시지역 증가, 농촌지역 감소)
	• 해당 계획으로 인하여 인구 및 연령 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해당 계획이 숙련된 근로자의 유입에 영향을 미칩니까? (교육기관, 이주민 교육, 자녀가 있는 여성, 노동 참여 환경 등)
저출산 대책	• 해당 계획이 출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대구에서의 가족공동체, 가족친화 인프라, 보육, 여가 활동, 육아 편의시설 등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유연적 근무, 재택근무, 일과 가정의 양립 등에 영향을 미칩니까?
고령화 대책	• 해당 계획이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노약자의 도움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노인들의 이동에 익숙한 환경을 제공합니까?
	• 해당 계획이 간호 및 잠재적 치유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까?
정주여건 개선	• 해당 계획이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교육이나 훈련 차원에서 시 전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교통 및 주거복지 향상에 영향을 미칩니까?
	• 해당 계획이 문화여가 환경개선에 영향을 미칩니까?
공통 항목	• 해당 계획으로 인하여 미래세대의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킵니까? (세금, 사회보장 등)
	• 해당 계획이 각 연령에 적합한 정책으로 고안되었습니까?
	• 해당 계획이 일반인들의 복지혜택에 영향을 미칩니까? (낮은 진입장벽 등)
	• 해당 계획이 농촌지역 등에서도 동등한 생활조건이 보장됩니까?



제 6 장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절 관련 제도 개편방안

제2절 관련 조직 개편방안

제6장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1절 관련 제도 개편방안

1. 인구영향평가 관련 조례 검토

□ 인구영향평가 관련 규정 제정 사례

- 현재 대구광역시의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인구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지 않으나,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의 경우 관련 조례에 인구영향평가 실시 규정을 담고 있음
 - 인구영향평가 제도는 시장이 수립해야 할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도 마련 노력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관련 규정 제정이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서 마련되면 관련 시책에 대한 예산 지원, 추진조직 등이 설계될 수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가 실시될 수 있음
- 인구영향평가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들 중에 경남은 별도 인구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인구정책 기본조례상의 규정으로 제도를 운영 중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의 2 인구영향평가제도 규정에서 도지사가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아 제6조의 2 규정에서 인구영향평가의 실시 대상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지표 개발 및 실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림 6-1〉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영향평가 관련 규정

<p>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 인구정책의 시행 제2항 •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p>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 인구정책의 시행 제2항 • 시장은 인구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p>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 한 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의3 인구영향평가 • 도지사는 도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간접적 파급효과, 장·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p>경상남도 인구정책 기 본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의2 인구영향평가 • ① 도지사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시행이 인구증감 및 구조 변화에 미치는 직접적·간접적 파급효과, 장기·단기 영향 및 사회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래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인구영향평가 관련 조례 별도 제정 사례

-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조례를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 부산, 서울 등임
-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인구영향평가 조례는 오랜 준비기간을 거친 후 2021년 5월 20일 제정·시행하고 있음
 - 경기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개정(2017년 6월 13일)을 통해 관련 조례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의 규정을 둔 이후,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모형 설계(2018년), 시범사업의 적용(2019년) 등을 거쳐, 2021년 인구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인구영향평가 실시 본격화
-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는 2020년2월5일 제정되었으나, 인구영향

평가에 대한 별도 규정은 2021년 7월 14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 6조 2항의 규정을 신설

- 기본조례 개정과 동시에 2021년 7월 14일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 2022년 1월 15일에 시행

○ 서울시의 경우 인구정책 기본조례 및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은 202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나, 인구정책 기본조례의 시행은 2022년 1월 1일로 규정

-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일은 2023년 1월 1일로 규정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갖고 있음

○ 각 조례는 목적, 정의, 책무 등 조례의 기본체계에 구성되어 있으나, 정책 여건에 따라 상세 규정은 다소 상이함

○ 서울시의 경우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설치 규정은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제4조 인구영향평가의 실시 조항에서 평가대상, 평가 관련 사무 위탁 규정 등을 두고 있음

- 별도 센터의 설치보다는 제4조 4항에서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기도 조례의 경우 제8조 시범사업의 규정이 특이 사례임

- 경기도는 2019년 1월 제정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평가를 통해 계획, 집행, 결과 등을 점검 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 인구영향평가제도도 제8조 시범사업의 규정을 두어, 인구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선행 정책사례인 경기도의 조례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구성
- 구체적인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에 앞서, 2022년 1월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먼저 설립
 - 2022년 1월 15일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자마자, 2022년 1월 17일 부산연구원 해양관광연구실 산하에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최초의 센터 설립으로 홍보
 - 부산연구원 산하에 조직만 설립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및 실시는 준비단계에 있음

〈그림 6-2〉 광역자치단체의 인구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서울특별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 인구영향평가의 실시 • 제5조 시범적용 • 제6조 인구영향평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 인구영향평가주체 • 제6조 인구영향평가대상 • 제7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 제8조 사무의 위탁 • 제9조 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 인구영향평가주체 • 제7조 인구영향평가대상 • 제8조 시범사업 • 제9조 인구영향평가시기 • 제10조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 • 제11조 평가방법

2. 대구 인구영향평가 관련 조례 개편안

- 앞서 단계별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에서 살펴보았듯이, 단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시범사업 실시는 현재 인구정책 기본조례 체계에서도 시행 가능
- 중장기적으로 인구영향평가제도의 기본모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조례 개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선행 정책사례를 고찰하였을 때, 조례 개편안은 두 가지 방안이 있음
 - 첫째, 경기도의 초기 사례와 경상남도의 사례에서처럼 인구정책 관련 조례에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실시 근거를 두는 안
 - 둘째, 경기도의 현행안과 서울 및 부산시 사례에서처럼 인구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안
- 전국 최초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 개편안은 제도에 형식에 치우칠 수 있는 별도 조례 제정안 보다는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실익이 높음
 - 현재 인구영향평가제도는 모법의 근거가 부재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하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 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의 개정 동향을 파악하며 조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를 개정하여, 2항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함
 - (조례 신설안) ② 시장은 인구정책이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관련 조직 개편방안

1. 인구정책 전담조직의 개편안

- 현재 대구광역시의 인구정책 담당팀인 미래인구정책팀은 인구정책 뿐만 아니라 시정발전과제 기획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조직 역량이 부족함
 - 따라서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인구정책을 전담할 조직으로 조직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유사한 구조로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획담당관 산하의 인구정책팀은 팀장 1명, 주무관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구광역시와 달리 인구정책 전담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구영향평가제도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대구광역시의 미래인구정책팀의 미래비전 관련 업무 등을 이관하고 미래인구정책팀을 인구정책팀으로 인구정책의 전담조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표 6-1〉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담당업무 분장 개편안

구분	담당업무	비고
인구정책팀장	• 업무총괄	팀장
주무관	• 인구정책 기획 및 조정 • 인구정책종합계획 수립 • 인구정책 관련 법령(조례 등) 제·개정 • 대구광역시 인구정책조정회의 운영	주무관
주무관	• 인구정책 관련 사업 발굴 및 추진 • 구·군 인구정책 관련 사업 검토 및 지원 • 대학생 정착지원사업 지원 • 대구경북연구원 연구과제 관리	주무관
주무관	• 인구영향평가제도 운영 •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 • 인구유입 추진에 관한 사항(전입) • 인구 통계 분석	주무관

2. 인구영향평가 실시기관의 지정안

□ 인구영향평가 주체 지정 사례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인구영향평가의 기본모형이 적용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인구영향평가를 직접 실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기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첫째, 시도의 전담조직이 직접 실시하는 방안(경기), 둘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도 출자·출연 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방안(부산), 셋째, 관련 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인구영향평가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안도 있으나, 행·재정적 비용의 과대 발생으로 기존 사례들의 경우에도 설립방안이 검토된 적이 있었으나(경기) 실제로 설립된 사례는 없으므로 방안에서 제외
 - 경기도의 경우 인구영향평가의 기본모형을 운용하고 있기보다는 1명의 주무관이 전담하여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사후영향평가제도만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시도 전담조직이 직접 실시하는 안은 중장기 방안에서 제외

□ 대구광역시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 주체 지정 방안

- 대구광역시의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실시기관을 지정하는 안은 다음의 두 가지 안이 고려될 수 있음
 - 첫째, 부산광역시의 사례에서처럼 시도 출자·출연 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방안
 - 둘째, 관련 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는 방안
- 두 가지 방안의 경우 모두 조례상의 사무위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7조를 개정하여, 3항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함

- (조례 신설안) ③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인구영향평가 기본모형 수행조직의 역할 및 기능

- 인구영향평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행조직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 중장기적 인구영향평가 기본모형을 수행하기 위한 수행조직의 역할 및 기능
 - 인구영향평가 총괄 관리
 - 사전영향평가 설계 및 분야별 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리
 - 사전영향평가 결과 관리 및 환류 모니터링
 - 사후영향평가 설계 및 관리
 - 소관부서의 인구영향평가 자체점검 관리 및 결과 검토
 - 인구영향 심층평가 추진 및 관리
 - 인구영향평가 결과 관리 및 환류 모니터링

참고문헌

- 경기도(2021), 2021년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최종보고서
- 경기도(2022), 2022년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작성서식
- 경기도(2022), 2022년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추진계획
- 경북대학교(2021),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한 대구 유출인구의 특성분석,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
- 고용노동부(2018), 정책고용영향평가 표준 매뉴얼
- 김성하(2016),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도입방안, 경기연구원
- 김정선 외(2016), 2016년 건강영향평가 사업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종훈(2017), 인구(저출산)영향평가체계 도입 및 평가방법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 김종훈, 우해봉(2018), 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인구정책평가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정, 박지영(2021), 1인가구 영향평가 지표 개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대구광역시(2020),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 대구광역시(2020), 대구광역시 2020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 대구광역시(2021), 대구광역시 2021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 대구광역시(2022), 대구광역시 20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 박종서 외(2019), 2018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진경, 김상민(2017), 전남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박진경, 김도형(2020),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 부산광역시(2022), 2022년 1월 부산 인구정책 브리핑
- 서울시 기획조정실(2022), 인구영향평가제도 정책연구 추진계획
-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여성가족부(2022), 2022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 우해봉, 장인수(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우해봉, 김종훈(2018), 인구영향평가체계 구축과 운영 - 인구정책 평가 연구의 현황과 관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병호 외(2018),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설계방안, 경기연구원
- 이삼식 외(2007),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10), 저출산 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13), 인구정책 현황과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2013.1), 48-63
- 이소영 외(2017), 2016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 외(2018),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아(2012), 가족영향평가 도입방안 탐색연구, 대한가정학회, 50(7): 97-107
- 정영호, 고숙자, 최슬기(2019),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은진(2011), 영국의 건강영향평가 정책의 동향, 보건복지포럼
- 통계청(2021.12),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 통계청(2022.5), 장래인구추계(시도편): 2020~2050년
- 한국개발연구원(2018), 저출산고령사회정책평가체계 개편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 고용영향평가센터(<https://www.kli.re.kr/>)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s://www.busan.go.kr/>)
- 부산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bdi.re.k>)
- 서울시청홈페이지(<https://newsearch.seoul.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 Caldwell, J.C., Caldwell, P., & McDonald, P. (2002),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its consequences: A global surve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19(10), 1-24
- Demeny, P. (2010), Population policy, in Zeng, Y.(ed.), *Demography: Encyclopedia of Life Support Systems (vol. II)*, Oxford: EOLSS Publishers/UNESCO, 294-313
- Eldridge, H.T. (1979), Population Policies,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New York: The Macmillan Co. and the Free Press, 12, 318-388
- Lutz, W. (2007), Adaptation versus mitigation policies on demographic change in Europe.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5, 19-25
- May, J.F. (2012), *World Population Policies: Their Origin, Evolution, and Impact*, Washington, DC: Springer
- OECD. (2001), *Improving Policy Instrument through Impact Assessment*, CCNM/SIGMA/PUMA
- European Centre for Health Policy. (1999), *Health Impact Assessment—Main concepts and suggested approach*